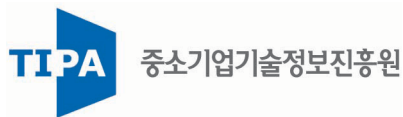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2007. 9

연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본 보고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제 출 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07년도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지원사업
으로 추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 9.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허 영 섭

연 구 진

<연구책임자>

허 현 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

<연구참여자>

한 기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연구팀장)

이 동 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선임연구원)

노 민 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임연구원)

이 혜 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

박 미 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

김 화 정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원)

< 목 차 >

제 1 장 조사개요	1
제1절 실태조사	1
제2절 유출기업 심층조사	2
제3절 문헌조사	3
제 2 장 실태조사 결과	4
제1절 산업보안 인식수준	4
제2절 산업기밀 유출현황	6
제3절 산업기밀 관리현황	10
제 3 장 기술유출 피해사례	12
제1절 국내 중소기업	12
제2절 해외진출 중소기업	37
제3절 해외 기업	46
제 4 장 기술유출 사전 대응방안	61
제1절 영업비밀 보호	61
제2절 지식재산권 권리화 및 보호	65
제3절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	68
제4절 사내 보안관리	72
제5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사전신고	77
제6절 해외진출 기업	81
제 5 장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84
제1절 퇴직자의 창업 또는 경쟁업체 취업	84
제2절 영업비밀 침해	86
제3절 지적재산권 침해	91
제4절 해외진출 기업(중국)	96
부 록	105

< 표 목 차 >

<표1-1> 기업유형별·업종별 표본기업 현황	1
<표1-2> 기업유형별·업종별 대상기업 현황	2
<표2-1> 산업기밀 유출시 조치사항(복수응답)	9
<표2-2> 산업기밀 관리현황(조직 및 제도)	10
<표2-3> 산업기밀 관리현황(보안감독체계)	11
<표2-4> 기업연구소 출입 및 접근통제 수단	11
<표4-1> 기술상의 영업비밀	61
<표4-2> 경영상의 영업비밀	62
<표4-3> 산업재산권의 종류	66
<표4-4> 영업비밀과 특허의 법적 차이	68
<표4-5> 영업비밀과 특허의 장·단점	70
<표5-1> 퇴직자에 대한 협조공문 요지	84
<표5-2> 영업비밀보호 관련 협조공문 요지	85

< 그림 목 차 >

<그림2-1> 핵심 산업기밀 내용	4
<그림2-2>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5
<그림2-3>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 여부	5
<그림2-4>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6
<그림2-5> 산업기밀 유출현황	7
<그림2-6> 산업기밀 유출횟수	7
<그림2-7> 1건당 산업기밀 유출 피해금액	8
<그림2-8>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복수응답)	8
<그림2-9>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기업유형별)	9
<그림4-1> 기술의 보호관리 방법	71
<그림4-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운영절차	79
<그림4-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신고절차	80

제 1 장 조사개요

제1절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07. 3. 28 ~ 2007. 5. 9
- 조사대상
 - 모집단
 - 2006년말 현재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 12,317개사
 - 표본기업
 - 4개 기업유형, 7개 업종을 고려하여 1,200개 기업 선정
 -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 허용오차 $\pm 3\%p$

<표1-1> 기업유형별 · 업종별 표본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 분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벤처/ 이노비즈	합 계
전기전자	100(22.4)	78(27.3)	36(20.8)	91(30.9)	305(25.4)
화학섬유	69(15.4)	25(8.7)	21(12.1)	28(9.5)	143(11.9)
기계소재	119(26.6)	65(22.7)	68(39.3)	76(25.9)	328(27.3)
정보통신	76(17.0)	76(26.6)	17(9.8)	67(22.8)	236(19.7)
건설업	10(2.2)	10(3.5)	11(6.4)	10(3.4)	41(3.4)
서비스업	58(13.0)	20(7.0)	10(5.8)	12(4.1)	100(8.3)
기 타	15(3.4)	12(4.2)	10(5.8)	10(3.4)	47(4.0)
합 계	447(100)	286(100)	173(100)	294(100)	1,200(100)

□ 조사내용

- 산업보안 인식수준
- 산업기밀 유출현황
- 산업기밀 관리현황
- 애로 및 건의사항

□ 조사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에 의한 응답자 기입 방식

제2절 유출기업 심층조사

□ 조사기간 : 2007. 7. 5 ~ 2007. 7. 27

□ 조사대상

- 실태조사에서 산업기밀유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13개사 중 유출피해액과 피해횟수, 지역 등을 고려하여 65개사를 선정

<표1-2> 기업유형별 · 업종별 대상기업 현황

(단위: 개사)

구 분	일반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벤처/ 이노비즈	합 계
서 울	7	11	1	13	32
경 기	12	6	3	3	24
기 타	-	3	2	4	9
합 계	19	20	6	20	65

□ 조사내용

- 기업현황, 유출배경, 피해규모, 유출 인지과정, 대응방법, 결과 및 개선사항 등

□ 조사방법 : 현지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제3절 문헌조사

□ 조사기간 : 2007. 8. 8 ~ 2007. 8. 22

□ 조사내용

○ 주요 국가별 기술유출 사례

□ 조사방법

○ 국내 : 기존 자료 및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례 분석

○ 해외 :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등의 해외 웹사이트 및
언론 보도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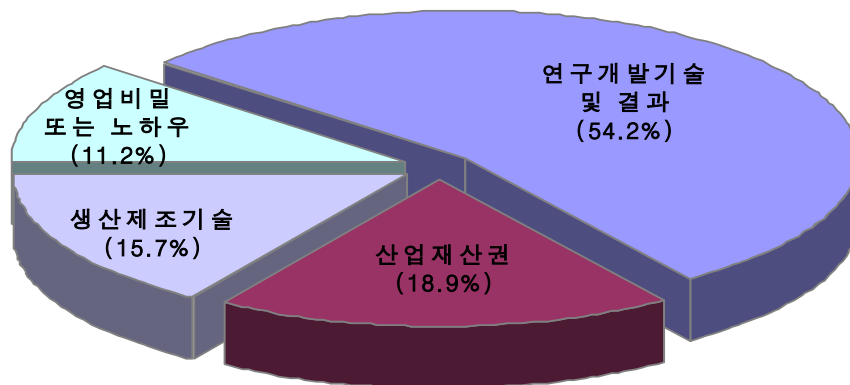
제 2 장 실태조사 결과1)

제1절 산업보안 인식수준

□ 핵심 산업기밀 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핵심 산업기밀은 연구개발기술 및 결과가 54.2%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재산권 18.9%, 생산제조기술 15.7%,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2-1> 핵심 산업기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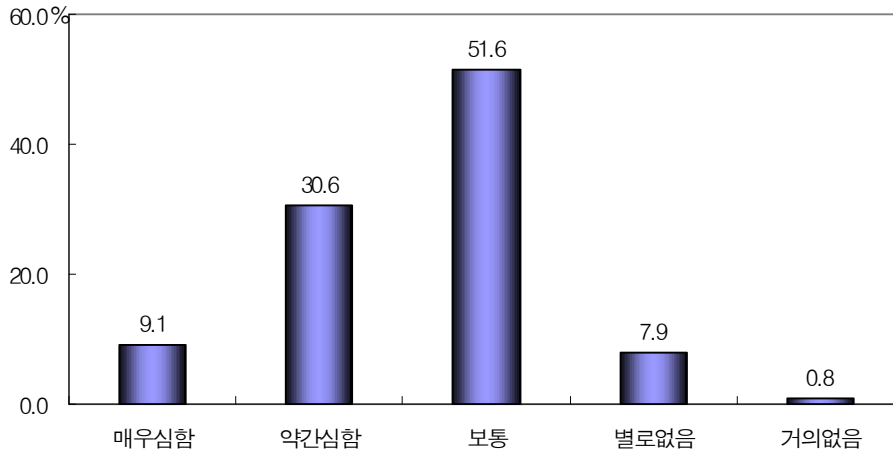


□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 중소기업들이 산업기밀 유출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응답기업의 39.7%가 심하다고 응답했으며, 51.6%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함. 반면 위협이 없다는 응답은 8.7%에 불과했음

1) 본 장은 2007. 3. 28 부터 2007. 5. 9 까지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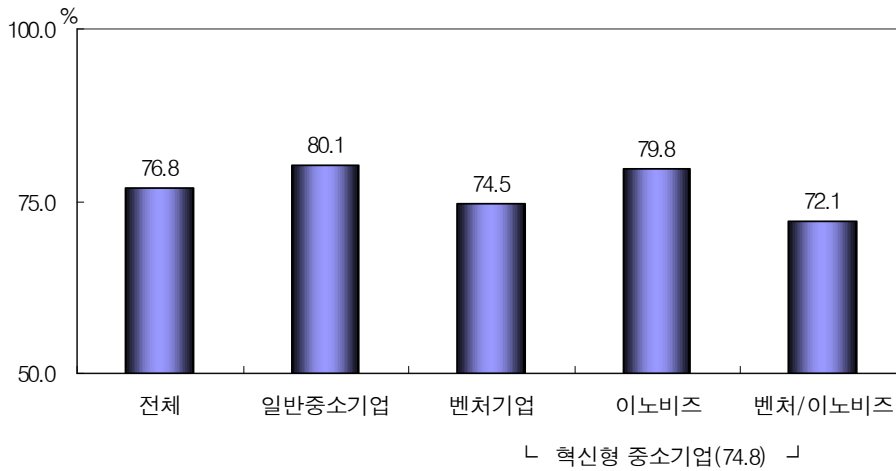
<그림2-2>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위협정도



□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 여부

○ 응답 중소기업의 76.8%가 기술개발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 비밀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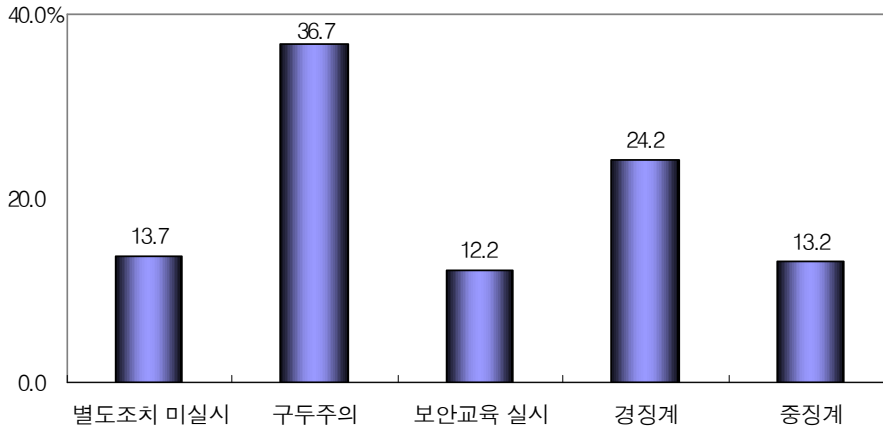
<그림2-3> 중요 정보에 대한 비밀분류 여부



□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 응답기업의 37.4%만이 징계 이상의 강한 처벌을 하는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별도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구두주의에 그치는 등 징계 이외의 형식적인 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4>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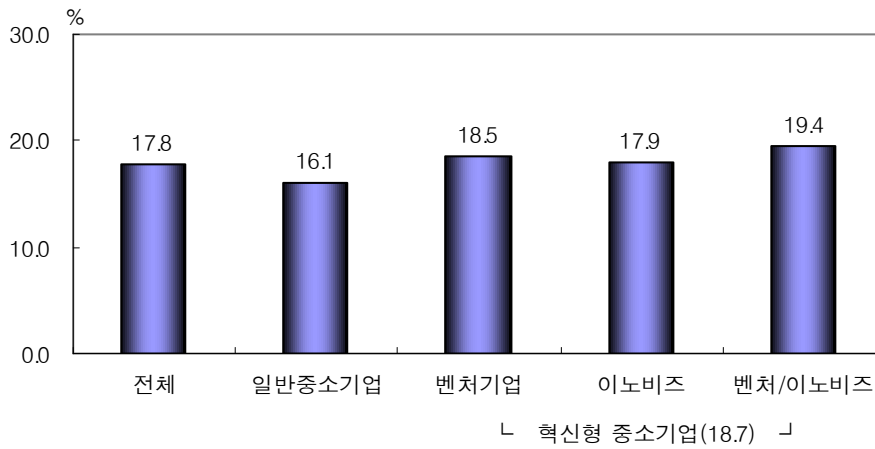


제2절 산업기밀 유출현황

□ 산업기밀 유출현황

- 응답 중소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밀유출 비율이 18.7%로 일반 중소기업의 16.1%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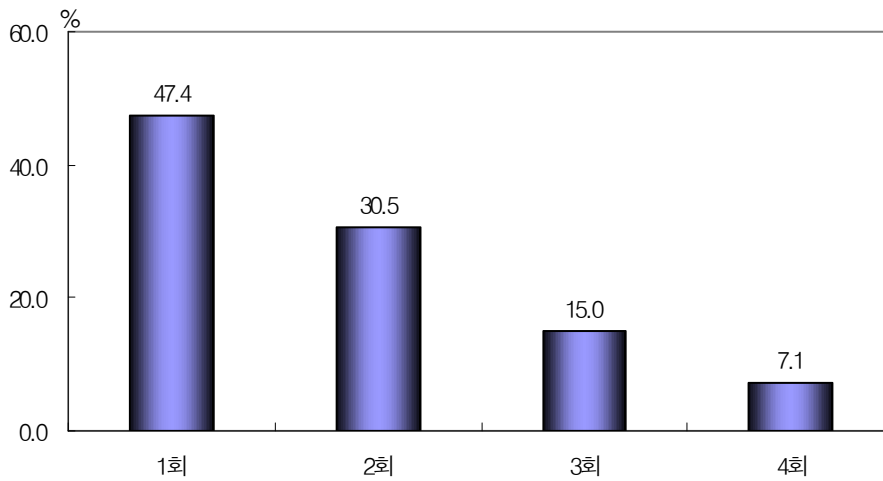
<그림2-5> 산업기밀 유출현황



□ 산업기밀 유출횟수

- 최근 3년간 내부 기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52.6%가 2회 이상의 기밀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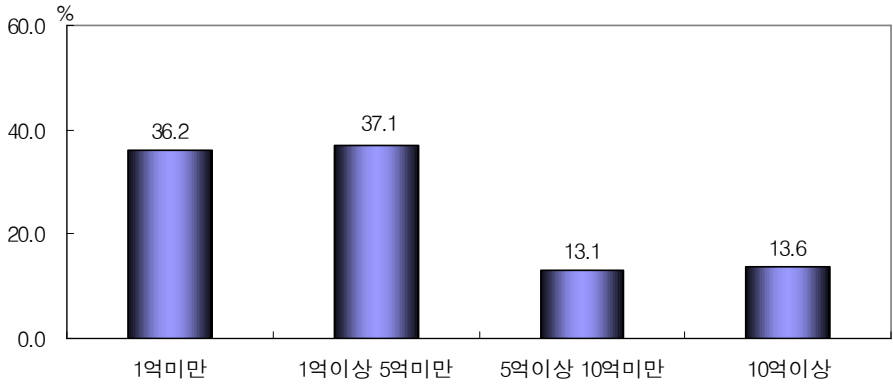
<그림2-6> 산업기밀 유출횟수



□ 1건당 산업기밀 유출 피해금액

-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경험이 있는 기업의 건당 피해금액은 '1억 이상 5억 미만'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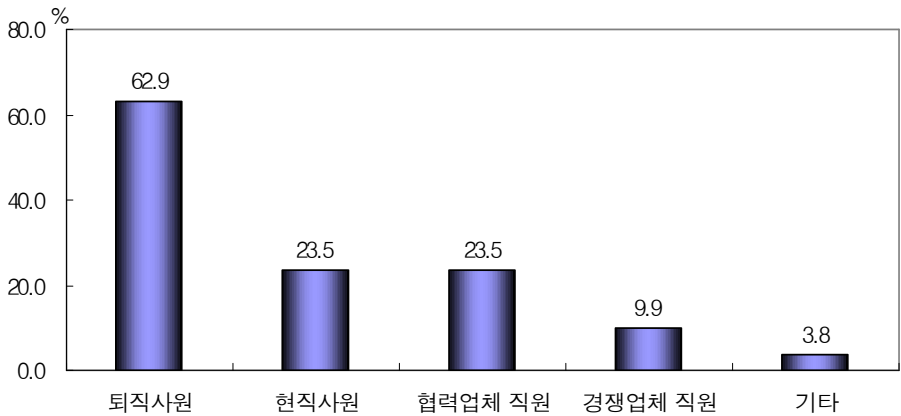
<그림2-7> 1건당 산업기밀 유출 피해금액



□ 산업기밀 유출관계자

-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는 퇴직사원이 62.9%로 가장 많았으며, 현직사원(23.5%), 협력업체 직원(23.5%)과 경쟁업체 직원(9.9%)이 주요 기밀유출 관계자로 조사됨

<그림2-8> 산업기밀 유출관계자(복수응답)



□ 산업기밀 유출시 조치사항

- 산업기밀 유출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이 52.6%로 높게 나타나 중소기업의 경우 기밀유출에 대한 사후대응이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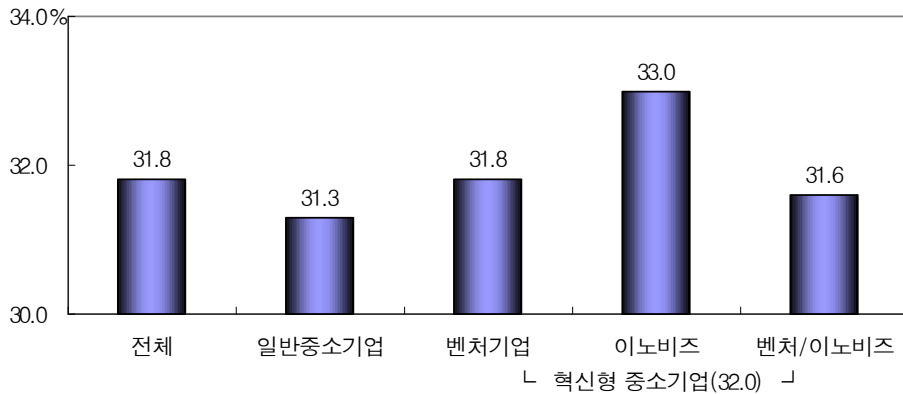
<표2-1> 산업기밀 유출시 조치사항(복수응답)

구 분	일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전 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2.8%	8.5%	6.6%
관계자(사) 고소, 고발	9.7%	18.4%	15.5%
관계자(사)에 손해배상 청구	4.2%	7.8%	6.6%
연구소 보안관리시스템 강화	38.9%	21.3%	27.2%
특별한 조치 미실시	47.2%	55.3%	52.6%
기 타	15.3%	9.9%	11.7%

□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

- 응답 중소기업의 31.8%가 최근 2년간 소속 연구원이 퇴사 후 경쟁업체로 전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2-9> 연구원 경쟁업체 전직현황(기업유형별)



제3절 산업기밀 관리현황

□ 조직 및 제도

- 조직 및 제도의 경우 일반 중소기업과 혁신형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5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특히 보안담당부서 설치(6.6%), 정례 보안점검·감사(9.8%), 정례 보안관리 교육(14.9%) 등의 경우 2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됨

<표2-2> 산업기밀 관리현황(조직 및 제도)

구 분	일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전 체
보안관리규정 마련	37.4%	34.1%	35.3%
보안담당부서 설치	6.3%	6.8%	6.6%
보안담당자 지정	26.8%	25.4%	25.9%
정례 보안점검·감사	8.7%	10.4%	9.8%
정례 보안관리 교육	17.2%	13.5%	14.9%

□ 보안감독체계

- 보안감독체계의 경우 방문자 출입통제와 입사시 비밀엄수서약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0% 미만으로 나타남
-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2-3> 산업기밀 관리현황(보안감독체계)

구 분	일반 중소기업	혁신형 중소기업	전 체
연구노트·일지 작성	35.3%	36.1%	35.8%
입사시 비밀엄수서약	53.2%	60.6%	57.8%
퇴사시 비밀유지 및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	43.2%	50.9%	48.0%
방문자 출입통제	64.9%	68.3%	67.0%
거래업체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41.2%	46.2%	44.3%

□ 기업연구소 출입 및 접근통제 수단

- 연구소 출입 및 접근통제 수단으로 카드키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이 5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시건장치 32.2%, 지문인식 시스템 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표2-4> 기업연구소 출입 및 접근통제 수단

구 분	시건 장치	지문인식 시스템	카드키 시스템	기 타	합 계
일반 중소기업	36.9%	10.7%	47.2%	5.2%	100%
혁신형 중소기업	29.4%	9.8%	53.6%	7.2%	100%
전 체	32.2%	10.2%	51.2%	6.4%	100%

제 3 장 기술유출 피해사례

제1절 국내 중소기업

1. 유출관계자

□ 전·현직 종업원

사례 1.

용접기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A사는 얼마 전 신입 연구원 B를 채용하고 신기술 개발에 참여시킴.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B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결국 CEO는 B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해고함

이에 불만을 품은 B는 A사의 핵심기술 중의 하나인 전원공급장치 도면 등 관련 정보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는 방식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 연구직을 보장받는 대가로 이를 경쟁업체로 넘김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전원공급장치 관련 기술정보
- 피해규모 : 약 1억원
- 유출인지 : B가 퇴사한 지 6개월 후 B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에 의해 알게 됨
- 조치사항
 - B에게 전화로 구두 경고하는 수준에서 그침
 - 새로 개발된 기술은 가능하면 특허출원을 하고, 같은 연구소 직원이라도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소스를 타인에게 공개하지 말 것을 교육

사례 2.

○○ 소프트웨어 부분 국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B사에서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팀원 5명이 단체로 회사를 퇴직하고 직접 후발업체를 설립함

B사에서는 퇴직사원이 후발업체로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는데, 얼마 후 퇴직자들이 B사의 기술 노하우를 이용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제기함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소프트웨어 솔루션
- 유출배경 : B사는 ○○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에서 국내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국내 선두기업으로 항상 국내·외 후발주자들로 부터 기술유출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음
- 피해규모 : 사업비(약 20억원) + α
- 유출인지 : 시장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국내 선두기업으로서 유통 경로를 훤히 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지 가능
- 조치사항 : 현재 소송 진행중이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사건을 매듭짓고자 함

사례 3.

게임개발업체인 C사에서 캐릭터 개발 담당자로 근무하던 A는 C사의 신제품 출시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사내의 친분 있는 프로그램 소스 개발 담당자와 함께 경쟁업체로 이직함

이들은 그동안 C사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해 왔던 게임 프로그램 소스와 캐릭터를 도용하여 유사한 게임을 만든 뒤 시장에 먼저 출시함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연구개발 중인 게임 프로그램 소스와 캐릭터
- 유출배경 : 게임 상품은 생명주기가 매우 짧은 편이고, 일단 흥행 조짐이 보이는 게임이 하나 출시되면, 얼마 후 시장에서는 이를 모방한 게임과 캐릭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남
- 피해규모 : 약 10억원
 - 경쟁업체가 먼저 제품을 출시함에 따라 게임개발을 원래 계획하고 추진했던 C사가 오히려 경쟁업체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함
- 유출인지 : 신제품 출시 마무리 단계에 있을 때 경쟁업체에서 C사의 것과 유사한 게임을 출시하였다는 소식을 접함
- 조치사항 :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고용하고 소송 준비 중

사례 4.

B는 D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훈련생 중 한 명으로, D사의 대표는 B가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매사에 성실한 태도로 작업에 임한다는 판단 아래 그를 부설연구소에서 프로젝트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함

연구소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던 B는 몇 달 뒤 갑자기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핑계로 휴가를 내고 모국으로 돌아갔으며, D사에서 는 나중이 되어서야 B가 자국 업체에 D사의 핵심기술 노하우를 넘긴 사실을 알게 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새로 개발중인 회사 핵심기술
- 유출배경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고용자가 한국 기업에서 익힌 기술과 노하우를 모국 기업

에 유출시키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 피해규모 : 약 20억원
- 유출인지 : CEO가 작업장을 돌던 중 우연히 다른 외국인 기술훈련생이 B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됨
- 조치사항
 - 유출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B의 행방을 쫓았으나, B는 이미 모국에서 잠적한 후였음
 -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시 D사에서 습득한 기술 및 노하우를 타사에서 이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함

사례 5.

Z사는 90년대 중반 공동창업을 통해 ○○ 제조장비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창업 당시 두 창업자는 서로 간에 동종분야에서의 창업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작성함

하지만 공동창업주 한 명이 회사를 그만두고 동종 사업분야에서 재창업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회사 창업의 근간이 되었던 핵심기술 및 영업노하우
- 피해규모 :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고 영업망이 감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음
- 유출인지 : 공동 창업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미리 대응방안 강구
- 조치사항 : 창업시 계약조건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해 법원에 의해 상대방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음

사례 6.

E사에서는 일본 시장 진출을 목표로 주식거래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었으나, 개발 책임자와 연구원 전원이 약 한 달간의 간격을 두고 모두 퇴사함. 이들은 그동안 개발했던 기술자료 등을 가지고 국내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독립된 사업팀을 조직함

전직한 업체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본 내 투자회사 등과 함께 일본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려 시도하였으나 국내 정보기관에 의해 발각되면서 계획이 무산됨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온라인 주식거래 프로그램
- 유출배경 : 회사 내에서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던 기술유출자들이 경쟁업체로부터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가 유출행위를 저지름
- 피해규모 : 정확한 피해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 기술유출자들이 E사가 망해야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로 회사를 음해함
 - 전체적으로 회사 조직이 와해되고 있는 듯한 조짐이 있으며, CEO와 직원들 간의 상호 불신이 심화됨
- 유출인지 : 정보기관의 수사 결과
- 조치사항
 - 검찰에 사건 가담자 전원을 고소하였으며, 1심 재판결과 유죄가 인정되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임
 - 보안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연구기획팀장을 통해 연구원의 개발성과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함
 - 관리자들이 보안교육을 받고 사내에 전파교육 실시

□ 협력업체 종사자

사례 1.

기존의 거래업체로부터 제품개발을 의뢰받은 F사는 시제품 제작을 마치고 샘플과 도면을 넘긴 뒤 양산발주를 기다렸으나, 오랫동안 연락이 오지 않음

한참 후에야 F사는 거래업체가 자사의 개발 제품을 토대로 중국 공장에서 이미 양산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제품 샘플 및 도면
- 피해규모 : 전년대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였고, 양산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 20여명을 해고함
- 유출인지 : 평소 친분이 있던 동종업계 사람이 중국 출장을 갔다가 소식을 듣고 사장에게 알려줌
- 조치사항 :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향후 계약체결전에 대해서는 제품 도면을 100%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함

사례 2.

건설현장 내 리프트를 제조하는 G사의 후발업체인 H사는 본래 타워크레인 제작만을 전담하던 중견기업으로, 얼마 전부터 타워크레인 개발 사업을 중단하고 리프트 제조 시장에 뛰어듦

G사는 H사의 기술수준이 자사보다 최소 2~3년 이상 뒤쳐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G사의 부품제조를 맡고 있는 협력업체의 도움으로 예상 밖으로 빠른 시일 내에 G사의 기술력을 따라잡게 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리프트 제조에 이용되는 각종 부품 제조기술
- 유출배경 : 업무의 특성상 특정한 기업이 동종업계 대부분의 외주 업무를 담당하여 협력업체를 통한 기술유출 가능성 상존
- 피해규모 : H사가 G사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약 20~30억원 규모의 매출액 감소
- 유출인지 : 회사 자체적인 시장동향 분석결과를 통해 인지
- 조치사항
 - 정확한 물증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부품업체에 도면을 넘겨줄 경우 반드시 유인물 형태를 띠도록 하며, CAD자료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함
 -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관리 교육 실시

사례 3.

자동차 부품을 개발하는 H사는 제품 제조를 맡긴 외부 하청업체를 통해 일본과 제휴해서 개발한 신기술 정보가 경쟁업체로 유출되는 사건을 겪음

여기에 기술제휴 과정에 참여했었던 H사의 현직사원까지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H사의 신기술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데 도움을 줌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자동차 부품관련 핵심기술
- 유출배경 : H사가 거래한 외부 협력업체는 H사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의 여러 회사를 상대하기 때문에 협력업체를 통해 경쟁업체의 기술들이 서로 노출될 우려가 있었음
- 피해규모 : 일본과 기술제휴를 위해 투자한 금액만 해도 3억원이

넘으며, 향후 피해금액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유출인지 : 시장이 좁고, 기술제휴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금방 인지 가능
- 조치사항 : 업계의 특성상 협력업체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협력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못하고 경고문을 발송함

사례 4.

자연친화적인 웰빙 조리기구를 개발하는 J사의 대리점 업주 50여명은 서로 담합하여 J사의 제품을 무단으로 카피한 뒤 유사제품 생산을 시도함

아울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안티카페를 개설하여 J사를 비방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유해성분을 정제하고 산화를 최소한으로 억제시키는 튀김기 제조기술
- 유출배경 :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발업체의 견제가 심하고, 직원들이 퇴사하여 직접 창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피해규모 : 실제로 핵심기술이 유출되지는 않았으나, 약 5억원 정도의 피해를 입음
- 유출인지 : 여러 대리점에서 J사와의 거래를 파기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알게 됨
- 조치사항
 -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 기술유출에 대한 주의 경고
 - 핵심기술의 경우 가능하면 특허를 출원하고, 협력업체와의 계약시 계약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사례 5.

네트워크 및 IT인프라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K사는 대기업 계열사인 한 정보통신 업체와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도중, 협력업체에서 내부 사정을 이유로 갑자기 연구개발 협력을 중단
얼마 후 해당 협력업체는 그동안 K사와 함께 개발해온 솔루션 소스를 이용하여 먼저 신제품을 출시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김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공동연구 중이었던 네트워크 관리 솔루션
- 유출배경 : 대기업(甲)과 중소기업(乙)이 지속적으로 원·하청 관계를 유지하거나, 기술개발 관련 협력을 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 측의 입장에서는 대기업 담당자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거절하기 어려움
- 피해규모 : 협력업체가 독점적으로 제품을 출시해 얻은 이익이 약 50억원에 이룸
- 유출인지 : 협력업체에서 출시한 신제품을 보고 인지
- 조치사항 : 공동 연구개발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 경쟁업체 종사자

사례 1.

(1) 귀금속 디자인 업체인 L사의 신제품이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경쟁업체에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L사의 제품을 구매하여 디자인을 카피한 뒤 생산·유통시킴

(2) 경쟁업체에서 입사를 희망하는 L사의 퇴직 디자이너에게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요구하여 신제품 디자인 도안이 경쟁업체에게 공개됨

- 기업유형 : 디자인
- 유출대상 : 신제품 디자인
- 유출배경
 - 회사간 디자인 카피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제품을 구매하면 바로 카피가 가능하다는 업계 특성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
 - 디자인 생명주기가 짧아 모든 디자인에 대해 특허를 취득하여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피해규모 : 약 15억원
- 유출인지 : 매장과 국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인지
- 조치사항
 - 회사 내에 지문인식시스템, CCTV 등을 설치·활용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복사를 금지
 - 디자인의 경우 '회사 소유'라기 보다는 '디자이너 소유'라는 인식이 강해, 직원들에게 퇴직시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L사에서 개발한 디자인을 활용하지 않도록 교육

사례 2.

M사 관계자가 제품 전시회에 참석했다가 자사의 것과 거의 흡사한 기계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확인한 결과, 지난 전시회 때 M사 제품을 눈여겨보았던 경쟁업체에서 M사 핵심연구원인 A를 스카우트하여 유사한 제품을 생산·유통시켰다는 정황을 포착
A는 M사에서 오랫동안 가족처럼 함께 지내던 직원으로, 전시회

개최를 4개월 정도 앞둔 당시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면 회사 사직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회사의 핵심기술인 ○○ Machine
- 유출배경
 - M사는 평소에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국내외 주요 전시회에 활발히 참가하면서 많은 경쟁업체의 타겟이 되었음
 - 직원에 대한 믿음이 커서 입·퇴사시 서약서 징구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해규모 : 약 10억원 + α
- 유출인지 : 전시회에 참가한 회사관계자가 우연히 발견
- 조치사항
 -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증거 입증문제와 시간·비용상의 이유로 경쟁업체와 1억 5천만원에 합의하면서 사건 종료
 - 유출사건 이후 직원들 입·퇴사시 서약서를 징구하고, 모든 기술개발 건에 대해 특허 출원 추진

사례 3.

영상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반도체, 전자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적합한 ○○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S사는 국내 한 전시회에 출품한 샘플이 에이전시를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함
샘플을 획득한 산업스파이는 제품을 분해하여 사진을 찍고 도면을 그린 뒤 경쟁업체로 정보를 넘김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S사의 기술적 노하우가 담긴 ○○ 시스템 샘플(완제품)
- 피해규모 : 약 5억원
- 유출인지 : 전시회가 끝난 뒤 얼마 후 경쟁업체에서 자사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출시
- 조치사항 : 에이전시 회사와 담당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 중

사례 4.

주차장 내 자동승강기 로봇을 개발하는 N사의 생산 공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로봇 사진을 찍고 달아남

이 사실을 알게 된 N사는 수소문 끝에 유출된 승강기 로봇 사진을 회수하였으나, 이미 설계도면이 경쟁업체로 넘어간 후였음
경쟁업체는 세부 설비구조만 조금씩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관련 처벌규정을 피해가면서 유사제품을 제작·판매함

- 기업유형 : 건설엔지니어링
- 유출대상 : 자체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차장 자동승강기 로봇 모델로, 특허취득 준비중이었던 핵심기술
- 유출배경
 - 새로운 기술개발 소식이 들리면 동종 기업들이 서로 카피하는 행태가 만연되어 있음
 - 공장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였으나 무용지물이었음
- 피해규모 : 약 5억원
- 유출인지 : 관련 전문업체가 국내에 많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인지 가능

○ 조치사항

- 유출된 기술에 대한 특허 취득 포기
- 이후 개발한 신모델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함

□ 기타

사례 1.

도로, 항만,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토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T사는 어느 날 갑자기 대표가 회사를 넘기고 사라지면서 혼란에 빠졌으며, 신임 경영진과 노조 간의 갈등으로 오랜 기간 동안 쟁의행위가 발생함

이러한 경영혼란을 틈타 연구개발인력 다수가 경쟁업체로 이직하고, 회사의 주요 기밀들이 유출됨

- 기업유형 : 건설엔지니어링
- 유출대상 : 핵심연구인력, 영업망, 핵심기술 등을 망라한 회사의 주요 기밀정보 일체
- 유출배경 : 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감과 신임 경영진과 직원들 간의 대화부족으로 장기간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핵심인력과 기밀정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규모 : 약 50억원
 - 영업정보 유출로 인해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현재 회사는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계약체결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책임급의 핵심 연구인력 다수가 경쟁업체로 이직하면서 기술경쟁력이 약화됨

- 유출인지 : 인력의 전직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지
- 조치사항
 - 최근 노사분규가 종료되었으나,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인력이나 정보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함
 - 분규 해결 이후 연구개발 인력을 보강하고, 퇴사한 직원들에 대한 복귀를 설득하고 있으며, 일부는 재입사함

사례 2.

소방자동화기기 생산업체인 K사의 ○○ 제품 시연회에 참관한 산업스파이가 시연 과정을 캠코더로 찍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시킴

이 때문에 K사의 기술이 경쟁업체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고, 경쟁업체에서는 제품의 단점과 실험 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섬

또한 기존 고객사들과 앞으로 계약체결을 앞둔 신규 거래업체들로부터 문의전화와 항의전화가 쇄도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개발 완료 단계에 있었던 ○○ 시스템
- 유출배경 : 제품 시연회에는 자문 등을 목적으로 외부인들이 참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보안검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피해규모
 -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기업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제품 수주에 어려움을 겪음
 - 이미 계약이 성사된 경우에도 확인 차원에서 시연회 실시를 다시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함

- 유출인지 : 관련업계 종사자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 알려줌
- 조치사항 : 외부사람이 회사를 방문할 경우 방문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각종 전자제품 사용을 제한함

2. 유출 산업기밀

□ 연구개발기술 및 결과

사례 1.

반도체나 각종 첨단 디지털 기기에 활용되는 레이저 장비를 생산하는 A사의 창업 멤버 중 한 사람이었던 B는 임원진과의 불화가 심해지자 퇴사를 결심하고 동일업종의 회사를 창업함

이후 B는 A사의 각 파트별 핵심 연구원을 한두명씩 스카우트해 가는 방법으로 7명의 연구원을 자신의 회사로 데려가, E사의 핵심 기술이자 원천기술인 레이저 마킹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회사 창업 당시의 원천기술
- 유출배경 : 회사 대표이사과 연구소장 간의 불협화음이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연구소장이 퇴사하면서 동료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함
- 피해규모 : 회사 창업의 근간이었던 기술이 유출되어 초기 회사가 안정화되는데 큰 타격이 되었음
- 유출인지 : 회사 관계자가 고객사에 제품을 납품하러 갔다가 우연히 타회사의 제품견적서를 발견하면서 핵심기술 유출사실을 인지
- 조치사항
 - 유출사실 확인 후 뒤늦게 특허출원을 추진했으나, 상대방 업체에서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박함.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출원된 특허 중 반려된 건수가 절반이 넘음

- 사건 후 모든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을 추진함
- 경쟁업체 취업금지, 보안유지각서, 비밀유지각서 등 보안관련 서약서를 징구함
- 회사 내부에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CCTV, 카드키 등 보안시스템 구축

사례 2.

구조물 안전진단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B사의 부설연구소에서는 얼마 전 ○○ 계측시스템 개발에 성공함

그러나 기술개발 후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준비기간이 점점 길어지자 인사와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A와 B가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경쟁업체에서는 그동안 B사가 공들여 개발한 계측시스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었으며, B사보다 먼저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시도함

- 기업유형 : 건설엔지니어링
- 유출대상 : ○○ 계측관리 시스템
- 유출배경 : CEO와 연구개발자 사이에 연구개발 종료시점과 상용화시점에 대한 심각한 갈등이 있었으며, 그 사이 인사담당 임원과 영업담당 임원이 연구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함
- 피해규모 : 향후 5년간 약 50억원 정도의 손실 예상
- 유출인지 : 좁은 경쟁시장으로 쉽게 인지
- 조치사항
 -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

- 연구소 인원이 아닌 관리직 종사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한 경우, 실질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절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소송제기가 불가능

사례 3.

C사의 부설연구소에서 유전자 진단 기기 및 치료제를 개발하던 연구원 5명이 집단으로 회사를 그만둔 뒤, 회사를 창업함

이들은 각 분야별 전문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C사에서 지난 2년간에 걸쳐 개발한 유전자 분석 장비 기술을 이용하여 유사 제품을 생산, C사보다 먼저 제품 판매에 나섬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유전자 분석장비 관련 기술
- 유출배경 : 사내 불링동호회 회원이었던 5명의 연구원이 의기투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창업함
- 피해규모 : 약 8억원
- 유출인지 : 시장 조사를 하다가 인지
- 조치사항
 -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승소하고 현재 2심 계류중
 - 경쟁업체 취업금지 서약 구체화 등 퇴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사내 동호회에 대한 지원 폐지

사례 4.

S사에서 주요 연구과제를 담당하던 연구원 A는 토목방수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동종업체로 이직함

A가 가지고 나간 기술은 S사의 핵심 기술은 아니었으나 2년여에

결친 연구개발 끝에 제품생산 준비 중에 있는 것이었음

동종업계 회사인 B사로 이직한 A는 가지고 나간 기술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신기술 인증까지 받고 상품화하였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활용 중에 있음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토목방수기술
- 유출배경 : 유출기술의 연구담당자였던 A는 본인의 연구가 회사 핵심기술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품생산 일정이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품고 있었음
- 피해규모 : 피해규모의 정확한 산정은 불가능하나, 유출자의 소속 회사인 B사가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음으로써 S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차질을 빚음
- 유출인지 : 제품생산을 앞둔 시점에서 경쟁회사에서 먼저 신기술 인증을 받고 제품을 상용화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지
- 조치사항 : '한술밥 먹던 식구'라는 인식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음

□ 산업재산권

사례 1.

제조업의 방수(Water-Proof)제지 기술을 건축자재에 적용시킨 ○○ 기술을 새롭게 개발하여 특허출원에 성공한 D사는 협력업체였던 하청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기다리고 있던 중 시장에 D사의 것과 유사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이를 수상히 여긴 D사는 상황파악에 나섰고, 하청업체 사장이

D사의 경쟁업체와 모의하여 신제품 관련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함

- 기업유형 : 건설엔지니어링
- 유출대상 : 회사 핵심기술
- 유출배경 : D사의 제품을 생산하던 협력하청업체에서는 평소 D사 이외에도 여러 경쟁회사들의 제품을 함께 취급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기술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했음
- 피해규모 : 약 10억원
- 유출인지 : 시장에 유사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지
- 조치사항
 -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준비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상대방을 처벌하지는 못하고, 공문을 보내 경고하는 차원에서 사건을 마무리함
 - 상대방보다 한 발 앞서 계약을 체결하고,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식 등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피해를 줄이려 노력함

사례 2.

고객사를 통해 우연히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E사는 얼마 전까지 E사에서 기술개발 담당자로 근무했던 A가 회사의 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경쟁업체에서 유사한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A는 과거 E사의 주요 기술을 모두 꿰뚫고 있었던 핵심인력이었으며, 이미 특허 등록되어 있는 E사의 기술 일부를 교묘하게 수정하여 이용하고 있었음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회사의 독점적인 특허기술인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 솔루션
- 피해규모 : 기술유출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시장이 좁아 거래처를 뺏기면서 발생한 영업활동에서의 애로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함
- 유출인지 : 영업사원이 고객사로부터 타사에서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 조치사항
 -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소송절차에 돌입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
 - 퇴직사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이제는 기업간 소송으로 확대됨

사례 3.

로그분석 솔루션 전문 개발업체인 F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외국계 경쟁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F사와 외국계 경쟁업체 간의 특허분쟁사건이 발생함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로그분석 솔루션 관련 특허기술
- 유출배경 : 2007년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의 영향으로 금융권과 공공기관들이 보안강화에 나섰으며, 이로 인해 보안로그분석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
- 피해규모 : 약 10억원
- 유출인지 : 거래업체를 통해 인지
- 조치사항
 -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년이 소요됨

- 재판 결과 특허의 소유권이 F사에 있음이 입증되었고, 경쟁기업과 유상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됨

□ 생산제조기술

사례 1.

금속재료 제조업체인 G사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직원이 회사의 현장을 보고 제조기술의 노하우를 파악하여, 경쟁업체에 정보를 제공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구리 및 구리합금재료 제조기술
- 유출배경
 - 생산제조 현장에 회사 외부 사람이 출입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었음
 - 동종 업계에서는 20여개의 업체가 경쟁 중에 있으며, 선두업체 1~2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사이에서는 경쟁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음
- 피해규모 : 매출액 20% 감소
- 유출인지 : 6개월 후 동종업계 사람을 통해 알게 됨
- 조치사항
 - 회사 외부로 노하우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음
 - 사건발생 이후 자재납품 창고를 별도로 마련하여 납품업체 직원이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함

사례 2.

금속재료 표면처리제 약품 제조업체인 H사의 기술책임자 A가 퇴사하면서 그가 개발했던 제조기술 전체를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함. 뒤이어 개발에 참여했던 다른 연구원 3명도 퇴사한 뒤 기술책임자를 따라 경쟁업체로 이직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약품 제조기술
- 유출배경 : 퇴직 직원들은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분관계가 두터운 사이였음
- 피해규모 : 약 15억원
- 유출인지 : 평소 친분이 있던 내부 직원에 의해 인지
- 조치사항
 - 경쟁업체와 이직당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 재판진행 과정에서 경쟁업체가 제품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약속하여 고소를 취하함
 - 경쟁업체에서는 이직 당사자들에 대해서 퇴사 조치함

사례 3.

전기부품 제조업체인 I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직하면서 지그(Jig) 관련 기술을 경쟁업체로 빼돌려 실제 생산라인에 적용시킴

※ 지그(Jig) :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에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데에 쓰는 보조용 기구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온도센서용 반도체소자 제조기술
- 유출배경 : 국내 소자업체들은 일본으로부터 핵심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다가 최근 들어 독자기술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으며, 동종업체간 경쟁이 심함
- 피해규모 : 약 3억원
- 유출인지 : 유출자와 함께 근무하던 연구원이 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동향을 파악하면서 인지
- 조치사항
 -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못함
 - 향후 모든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법적보호를 위해 권리화 추진

□ 영업비밀 또는 노하우

사례 1.

A사의 연구소에서 국책과제를 준비 중이었던 연구원 B, C가 한 달 간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후 팀장 D까지도 개인 신상문제를 이유로 퇴사함

몇 개월 뒤 국책과제 입찰을 위해 사업제안서를 발표하는 장소에서 퇴사한 B, C, D가 경쟁업체 대표로 나와 A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함

- 기업유형 : 정보통신
- 유출대상 : A사가 준비중이던 온라인 교육콘텐츠 사업 기술제안서, 노하우, 관련 DB 등 영업비밀 일체

- 유출배경 : 업계 전반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노하우가 거의 고갈된 상태여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상황임
- 피해규모 : 약 10억원 규모의 국책과제 입찰에서 탈락하고 사업권은 경쟁업체로 넘어감
 - 경쟁업체는 유출기업의 콘텐츠뿐만 아니라 기술제안서, 인적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사계약을 체결함
- 유출인지 : 사업제안서 발표 장소에서 마주침
- 조치사항
 - 과제관리 기관에 항의해 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음
 - 혐의에 대한 입증사유가 부족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함

사례 2.

B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A는 본인이 관심 있는 연구를 더 해보고 싶으면서 회사를 퇴직하고 개인회사를 설립. 그러나 얼마 후 A는 동료 연구원이었던 C를 스카우트해가고, B사에서 함께 연구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출시, B사의 일부 거래업체들과 계약을 맺음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기능성 화장품 원료 제조법
- 피해규모 : 약 5,000만원
- 유출인지 : A가 퇴사한 후 6개월쯤 지났을 때 B사 관계자가 거래처를 방문하여 우연히 소식을 접함
- 조치사항
 - A에게 경고차원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위법사항을 인식시킴
 -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 측에서 서로간의 영업범위를 잘 조정하여 이후 큰 마찰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

- A가 설립한 회사는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B사의 경쟁업체로 발전함

사례 3.

안테나 모듈 제조업체인 J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A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4명의 동료직원들을 포섭하여 핵심기술과 함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고객정보를 CD로 미리 구워 놓은 후 경쟁업체로 이직함

경쟁업체는 현재 J사와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음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안테나 모듈 설계·생산기술 및 관리고객 명단
- 피해규모 : 약 10억원 정도로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있으나, 경쟁업체가 대규모 생산체제를 갖추고 영업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앞으로 피해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유출인지 : J사와 경쟁업체에 동시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퇴직사원들이 경쟁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인지
- 조치사항
 - 법적대응을 검토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포기함
 - 기존 거래업체에 상기 사실을 통보
 - 지식관리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을 구축, 기존의 암묵지를 형식지로 전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제2절 해외진출 중소기업

1. 유출관계자

□ 현지채용 인력

사례 1.

보안 카메라 전문 생산업체인 A사는 중국 심천에 현지 법인을 설립한 뒤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생산에 착수함
하지만 제품이 생산·판매되고 있던 도중 현지에서 고용한 현지 생산직 직원이 A사의 제품 회로도를 몰래 절취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함
유출자는 제품 도면을 가지고 다른 도시로 이동, 그곳에서 유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김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제품 회로도
- 유출배경
 - A사는 관련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함
 - 중국 현지에서 제조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생산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완제품 샘플 및 주요 기술도면 등이 중국 현지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음
- 피해규모 : 유출자가 제품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여 유통시킴으로써 전체 제품가격이 하락하였으며, 불법복제 제품의 불량률이 높아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가 손상됨
- 유출인지
 - 유출자가 제품을 상용화하기 전까지는 유출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함

- 고객사에서 A사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이 시장에 새롭게 출시 되었다고 먼저 제보해 주어서 인지

○ 조치사항

- 유출사건에 대한 사전확인 작업과 동시에 중국 공안에 신고하여 협조를 요청한 뒤 유출자를 추적함
- 유출자 체포 후 사건 종료

사례 2.

세계적인 가발 제조업체인 B사는 노동집약적인 가발산업의 특성상 10여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생산기지를 마련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국 공장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경영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함

원인을 조사한 결과 중국 공장에서 일하던 핵심 기술자가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여 유사 제품을 만들어 해외 바이어들에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 시장을 차츰차츰 잠식해 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세계적 수준의 가발제조 기술

○ 피해규모 :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응이 늦었을 경우 도산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었음

○ 유출인지 :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급감하여 자체 조사에 나선 끝에 인지

○ 조치사항

- 긴급자금 3억원을 투입해 본사 파견인력이 주요 기술을 통제하고, 핵심제품 일부를 본사에서 직접 생산·조달하는 방식으로 생산라인을 개편

- 현지근로자와 기밀유지계약을 작성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에게도 개별 ID를 부여하여 출입구역을 지날 때마다 기록이 남도록 함

사례 3.

전자제품 부속품 생산업체인 M사의 중국 현지 공장 책임자로 지내던 A는 자신이 승진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휴대전화 진동 모터 관련 설계도면 수십장을 자신의 아파트로 빼돌려 놓았으나, 이 같은 사실이 곧 회사 임원진에 의해 적발되어 회사로부터 강제 퇴직조치 당함

이에 앙심을 품은 A는 자신과 함께 일했던 중국인 기술자 B를 통해 새로 개발 중인 스텝핑 모터 설계도면을 넘겨받고 M사의 경쟁업체인 중국의 N사에 접근, 모터 설계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익의 20%를 받기로 함

뿐만 아니라 A는 M사의 것과 유사한 스텝핑 모터를 자체 제작하여, N사의 한국 책임자인 C를 통해 국내 전자업체에 판매를 시도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스텝핑 모터 제작기술
- 피해규모 : 직접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않지만, 유출되었을 경우 향후 5년간 400억원 가량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 유출인지 : 정보기관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M사에 알려줌
- 조치사항
 - 관련자 고소고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A를 구속기소하고, C를 불구속기소함

□ 협력업체 종사자

사례 1.

○○ 검사 측정기를 개발하는 H사는 얼마 전 중국 청도에 진출 하였으나 파트너가 관련 기술을 몰래 빼내 같은 업종의 회사를 설립, 거래선을 모두 빼앗겨 결국 공장 문을 닫고 한국으로 철수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 검사 측정기 관련 응용 프로그램
- 유출배경
 - 중국 기업이나 관리들은 투자만 하면 모든 것을 해 줄 것처럼 호의를 보이다가도 일단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음
 - 파트너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장기적인 신용조사가 부족했고 치밀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했음
- 피해규모 : 파트너사는 H사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현지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영업망을 장악하였고, H사는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 존립 위기에 처함
- 유출인지 : 기존 거래처의 담당자를 통해 인지
- 조치사항 : H사의 협력업체는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청도 인근 지역을 이끌어 가는 중견기업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해, H사는 이러한 기업을 대상으로 아무런 법적 대응을 취하지 못한 채 결국 공장을 폐쇄하고 한국으로 철수함

사례 2.

상하이 인근 창저우에 투자한 기계관련 업체인 S사는 S사가 지분 75%를, 중국의 파트너사가 나머지 25%를 현물(토지)로 투자하

는 방식으로 합작계약을 맺음

그런데 중국 업체는 계약서의 '이후 토지를 평가해 자본금 이상 나오면 현금으로 보상한다'라는 조항을 빌미로 토지 자산평가를 다시 받아 자본금보다 1억 위안(약 1백 50억원) 이상 많이 나왔다며 보상을 요구함

- 기업유형 : 기계소재
- 유출대상 : 중국 업체가 S사의 핵심기술이나 노하우를 노렸다가 보다는 중국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S사를 사기 대상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접근함
- 피해규모 : 합작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 진출이 완전 무산됨
- 조치사항 : S사의 대표가 중국업체의 땅값을 미리 알고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조항을 일부러 계약서에 포함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할 길이 없었음

□ 경쟁업체 종사자

사례 1.

각종 장갑을 생산, 판매, 수출하고 있는 M사의 상해 생산 공장에 경쟁업체 사람으로 추정되는 중국인이 불량품을 모아 놓는 창고에 몰래 잠입함. 창고에는 품질심사에서 탈락한 폐기 직전의 제품들이 쌓여 있었고, 침입자는 이를 뒤지고 있다가 M사의 건물 관리인에게 목격되어 붙잡힘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환경친화성 산업용 보호장갑 제조기술

- 피해규모 : 품질검사 단계에서 탈락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기능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규격이 맞지 않거나 바느질 불량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품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 M사가 입을 타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예상됨
- 유출인지 : 건물관리인이 침입자를 발견
- 조치사항
 - 침입자에게 사실을 추궁하였으나 끝까지 부인하여 별도로 신고는 하지 않고 구두로 강하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그침
 - 불량품 저장창고 및 폐기장 근처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인이 함부로 사내에 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통제함

사례 2.

포토프린터 엔진과 전용 카트리지를 개발·판매하고 있는 P사는 자사가 발명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과 유사한 모델이 중국 절강성(浙江省)의 한 공장에서 제조되어 동남아 지역으로 대량 수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됨

P사가 증거확보를 위해 제품을 구입하여 살펴본 결과 경쟁사의 제품이 P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를 증거로 하여 유사제품이 수출·판매되고 있던 동남아 각 국에 중국 경쟁회사를 제소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포토프린터 전용 카트리지 개발 관련 특허
- 피해규모 : 약 50억원
- 유출인지 : 유사제품 직접 구입 후 확인
- 조치사항
 - 경쟁업체 제품을 구입하여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한 뒤 곧바로

경쟁사를 제조하였으며, 재판에서 승소하여 경쟁업체의 제품의 동남아 판매가 금지됨

- 사건발생 이후 P사는 한국과 중국에서 뿐만 아니라 제3국에서의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기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도 강화함

사례 3.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발포제를 제조하는 K사는 2년간의 노력 끝에 신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공장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함

비슷한 시기, 중국 J사는 K사의 중국 지사장인 A에게 접근, J사의 회사 지분과 부사장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K사의 신제품 제조 기술과 유통관리 등에 대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올 것을 제안하였으며, A는 K사의 해외영업담당인 B와 C까지 매수하여 관련 정보를 J사에 넘김

- 기업유형 : 화학섬유
- 유출대상 :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발포제 제조기술 및 유통관리 프로그램 등 K사가 2년여에 걸쳐 수십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
- 유출배경 : 최근 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현지에서 지사나 공장을 관리·감독하는 한국인 책임자가 중국기업들로부터 기술유출의 대가로 금전적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아짐
- 피해규모 : 유출되었을 경우 해외 거래처와 판매 단가 등이 공개되면서 연간 약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됨
- 유출인지 : 국내 정보기관의 수사 결과
- 조치사항 : 관련 기술이 J사에 넘어가기 전 경찰이 지사장 A 등 관련자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로부터 기술을 매입한 중국 J사 대표에 대해서는 중국 공안의 협조를 얻어 수배령을 내림

2. 상표도용 및 무단복제

사례 1.

콘텐츠 생산업체인 T사는 중국 현지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물량을 뚜렷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줄이자, 이를 이상히 여기고 자체 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바이어가 T사 몰래 중국 내에서 직접 모조품을 제조해 중국 내수시장에 정품과 섞어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을 포착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콘텐츠 제조기술
- 유출배경
 - 일명 ‘짜퉁’으로 불리는 중국산 모조품은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주범이지만, 중국정부가 단속에 소극적이며 처벌 강도도 약해 한국의 많은 중국진출 기업들이 고전하고 있음
 - 모조품의 경우 최종품을 완전 조립한 후에도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중국 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마지막 작업단계인 상표 및 라벨 부착은 비밀리에 재빨리 진행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 피해규모 : 저질의 모조품에 대한 반품 및 교환 신청이 급증하고 소비자들로부터 항의가 쇄도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약 2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무엇보다도 기업 이미지가 많이 손상됨
- 유출인지 : 거래물량이 점점 줄어들어 이를 수상히 여기고 자체 조사에 나선 끝에 인지
- 조치사항 : 중국 바이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소송 진행 중

사례 2.

K사는 핸드폰용 부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로 중국 심천에 새로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제품을 생산하던 중, 중국의 한 단속업체로부터 중국의 전자제품회사인 H사가 인근지역에서 K사 부품의 모조품을 대량생산하여 유통시키려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

그러나 부품 견본품을 단속업체에 보내고 사실 확인 절차를 걸치는 사이 모조품은 모두 판매되었고, K사와 단속업체는 H사가 모조품 생산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예의주시함

- 기업유형 : 전기전자
- 유출대상 : 핸드폰에 내장되는 각종 부품
- 피해규모 : 약 50억원
- 유출인지 : 중국의 한 단속업체가 K사 부품의 모조품이 중국에서 다량으로 생산되고 있음을 알려줌
- 조치사항
 - 불법으로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중국 단속팀과 함께 감시를 시작함
 - 광둥성에 H사의 또다른 판매점과 제품창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K사가 감독당국에 기습단속을 요청하여 중국 단속팀이 3,600여개의 모조품을 몰수, 폐기 처분함

제3절 해외 기업

1. 미국²⁾

(1) Connecticut Man Pleads Guilty in U.S. Court to Selling Stolen Microsoft Windows Source Code

(U.S. v. Genoves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ugust 29, 2005)

- Microsoft사의 Source Code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Genovese가 기소된 사건
- William P. Genovese, Jr.는 본인 홈페이지 'illmob.org'에 자신이 훔친 Microsoft Windows NT 4.0과 Windows 2000의 소스 코드를 올리고 이를 판매한다는 메시지를 게시하는 한편, 소스 코드를 복제하거나 취약성을 발견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허용함
- Microsoft사가 고용한 온라인 보안 회사의 검사관과 FBI는 피의자의 웹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후 피의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함
- 또한 피의자는 다른 컴퓨터에 그가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유포하고, Keylogging Software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컴퓨터를 장악하였으며,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인스턴트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알림
- Genovese는 법원으로부터 최대 10년을 복역할 것과 이익금의 두 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2) 미국 연방법무부(USDOJ,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에서 공개한 경제 스파이법 관련 사례

(2) Silicon Valley Engineer Indicted for Stealing Trade Secrets and Computer Fraud

(U.S. v. Zhang,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December 22, 2005)

- Netgear, Inc.는 컴퓨터 네트워킹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Marvell Semiconductor, Inc.와 Broadcom Corporation사의 주요 고객임
- Netgear사의 전직 직원이었던 피의자는 Marvell사의 제품에 대한 영업비밀 및 비공개 정보와 제한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Broadcom사로부터 스카우트를 제의받은 피의자는 Marvell사의 Extranet을 통해 이 회사의 스위치와 트랜스ceiver 제품에 관한 기밀 수십 건을 세 차례에 걸쳐 다운로드 받아 Broadcom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함

(3) Chip Design Engineer Pleads Guilty to Transporting Stolen Property of Silicon Valley Company to Taiwan

(U.S. v. Tsai,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eptember 6, 2005)

- Silicon Valley에 소재한 반도체 회사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근무 하던 Shin-Guo Tsai가 Volterra's VT1103 제품과 관련된 데이터 시트를 훔쳐 타이완에 있는 경쟁업체로 전송한 혐의로 체포됨
- 데이터 시트에는 회사 소유의 대외교섭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담겨 있었으며, 이는 미화 12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추정됨

(4) Software Executive Admits to Conspiring to Misappropriate Chief Competitor's Trade Secrets - Second Guilty Plea in Case Involving Trade Secret Theft by Corporate Executives of Business Engine Software Corporation(BES)

(U.S. v. McMenemy,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eptember 29, 2005)

- Business Engine Software Corporation(BES)사의 부사장인 William F. McMenemy는 경쟁회사들에 대해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의 다른 임원들과 공모하여 10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경쟁사인 Niku사의 컴퓨터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으로 접속하여 영업 비밀을 빼냄

(5) Two San Jose Men Indicted for Stealing Trade Secrets Worth Over \$1 Million

(U.S. v. Lam(Tran),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November 4, 2004)

- C&D Semiconductor Services Inc.(C&D)의 전 직원이었던 Mr. Lam은 More Technology Services Inc.(MTS)을 설립하고, C&D로부터 핵심기술을 도용하여 이를 재가공한 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한편, C&D의 고객들을 유치함
- Mr. Lam이 훔친 기술은 'Track Systems'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고감도 사진필름을 실리콘웨이퍼³⁾에 적용하는 반도체 장비 관련 기술이며, 그는 이를 위해 C&D의 직원 몇 명을 스카우트하여 도

3) 실리콘웨이퍼는 집적 회로가 조립되어 있는 얇은 실리콘 원판을 말하며, 조립 후에 검사가 끝나면 웨이퍼는 개별 칩으로 잘려서 완성된 집적 회로로 사용됨

안과 조립도, 유사 장비 등 관련 자료와 공구제공술을 획득함

- 추정되는 손실액은 약 119만 달러임

(6) Former IT Director of Silicon Valley Company Pleads Guilty to Theft of Trade Secrets - Scheme to Steal and Offer Back-Up Tapes to Competitor Foiled When Competitor Contacted FBI

(U.S. v. Woodward,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August, 1, 2005)

- IT 회사인 Lightwave Microsystems, Inc.의 전직 디렉터였던 Brent Alan Woodard가 회사의 기밀이 포함된 백업 테이프를 훔쳐 이것을 경쟁업체인 JDS-Uniphase사에 넘김
- Brent Alan Woodard는 2002년 말 Lightwave사가 영업중단을 발표하자, 영업비밀이 담긴 백업 테이프를 훔쳐 'Joe Data'라는 이름으로 관련 정보 판매를 시도하고, 'lightwavedata@yahoo.com'이란 이메일 계정을 개설하여 관련 정보를 JDS사의 기술 담당관에게 제공함

(7) Los Angeles Man Sentenced for Stealing Trade Secrets Pertaining to 'Smart Card' Technology

(U.S. v. Serebryany,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September 8, 2003)

- Igor Serebryany는 DirecTV사의 법률 고문인 Jones Day Reavis & Pogue의 복사서비스 담당직원으로, 고용기간 중 DirecTV사의 '4세대 접속카드'와 관련된 핵심 기밀을 훔침
- 그동안 DirecTV사는 그동안 법률 고문인 Jones Day에게 DirecTV

사의 벤더 중 하나인 NDS Americas, Inc.와의 소송과 관련해 '4세대 접속카드' 기술을 포함한 회사의 기밀자료들을 제공해 왔음

- DirecTV사는 미국 전역의 가정과 기업에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와 텔레비전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업체로, 수신을 원하는 가입자가 DirecTV사의 위성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제한수신시스템⁴⁾ 접속카드 등 하드웨어 아이템이 필요함. 접속카드는 위성 프로그램의 보안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심 컴포넌트로, DirecTV사는 '4세대 접속카드' 개발을 위해 2,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함
- Igor Serebryany는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으로부터 6개월간의 가택 연금을 포함한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손해배상금으로 DirecTV사와 Jones Day에게 \$146,085를 지급할 것을 명령받음

(8) Guilty Plea to Economic Espionage

(U.S. v. Morris, District of Delaware, October 17, 2002)

- John Berenson Morris는 섬유회사인 Brookwood Companies, Inc.의 가격정보자료를 훔쳐 이를 경쟁사인 Newark-based W. L. Gore & Associates, Inc. 측에 넘기려다 체포됨
- 유출된 가격정보는 군용 직물제품 생산을 위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국방부 입찰 건과 관련된 것으로, Morris는 W. L. Gore사에 전화를 걸어 이를 넘겨주는 대가로 10만 달러를 요구함. 그러나 W. L. Gore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연방법원에 연락하였고, Morris는 W. L. Gore사의 직원으로 위장한 국방부 비밀수사관과 접선을 시도하다 체포됨

4) 제한수신시스템(Conditional Access System) : 특정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수신 가능 여부를 사용자의 디지털 수신기가 결정하도록 하는 장치로, 정당한 수신료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지털 방송 상업화의 기본 필수기능임. 최근에는 과금과 편리성,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의 고유개인정보를 가진 스마트 카드로 사용자에게 비밀키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 John Berenson Morris에게는 10년형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9) Former Engineer of White Plains Software Company Receives Two Years in Prison for Theft of Trade Secret

(U.S. v. Kissan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October 15, 2002)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System Management Arts Incorporated (SMARTS)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던 전직 직원 Timothy Kissane는 자신이 개발하고 있던 'InCharge'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스코드를 이메일을 통해 경쟁업체로 넘긴 혐의로 기소됨
- 소스코드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도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만약 경쟁회사가 이를 획득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손쉽게 변형시킬 수 있음. 이 때문에 SMARTS사는 Incharge의 소스코드를 핵심기밀로 분류·관리하고 있었으며, 보안을 위해 소스코드 접근권자인 Kissane과도 고용계약당시 관련 정보에 대한 '평생' 비밀유지서약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Kissane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뒤 SMARTS사의 경쟁회사 두 곳에 InCharge의 소스코드를 판매하고자 한다는 이메일을 보냈으며, 경쟁회사들은 이 사실을 곧바로 SMARTS사에 알림

(10) New Indictment Expands Charges Against Former Lucent Scientists Accused of Passing Trade Secrets to Chinese Company

(U.S. v. Comriad, District of New Jersey, April 11, 2002)

- Lucent Technologies사에서 'PathStar Access Server'의 개발담당자로 일하던 전직직원 Hai Lin과 Kai Xu, 그리고 PathStar 프로젝트 컨설턴트였던 Yong-Qing Cheng 등 세 명은 이메일, 패스워드로 보호되는 웹사이트, 중국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베이징 소재의 벤처기업인 Datang Telecom Technology Co.에 'PathStar Access Server'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훔쳐 넘겨줌
- PathStar Access Server는 아날로그 음성 신호를 인터넷이 인식 가능한 전송단위로 전환시켜 다양한 전화통화법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Lucent사의 핵심기술이었음
- 본래 이들 세 명은 ComTriad Technologies, Inc.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훔친 기술을 도용한 'CLX-1000'이라는 수정판 제품을 자체적으로 제조·판매하기 위해 벤처 캐피탈 컨설턴트를 통해 융자신청을 시도함. 그러나 컨설턴트가 'CLX-1000' 시제품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Lucent사의 기술을 도용한 사실이 탄로날까봐 그와의 접촉을 중단함
- 대신 이들은 베이징에 소재한 Datang사에게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여, Datang사로부터 50만달러를 투자받고 'CLX-1000'의 시제품을 제공하기로 함
- 이후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날까봐 ComTriad사의 모든 공식 문서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삭제하고, 회사 전자메일 이용시에도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아내들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것으로 드러남

2. 일본

(1-1) 텐소 기밀 도난 : 중국인 용의자, 데이터 이미 암호화
(마이니치 신문, 2007년 3월 17일)

-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인 텐소사(아이치현 카리야시)에서 기밀 데이터를 기록한 컴퓨터가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용의자로 중국인 엔지니어 양루촨이 체포됨
- 그러나 용의자가 데이터를 옮긴 일부 기억매체는 발견이 되지 않았고, 입수한 매체의 경우에도 암호화 되어진 것으로 판명됨. 소재 불명의 매체에 기록된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이미 일본 밖으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경찰이 제공처와 이용 목적 등을 추적 중에 있음
- 조사에 따르면, 용의자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회사 대여 노트북에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엔진 설계 등과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한 뒤,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가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디스크에 데이터를 복사한 것으로 밝혀짐
- 경찰에서 회사 대여 컴퓨터를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여러 기억매체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는 데이터 전송으로 인해 생긴 단절적 액세스 기록이 남아있었음. 자택과 직장의 가택수사에서 찾아낸 여러 개의 기록매체와 조합해 본 결과, 아직 찾아내지 못한 기억매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됨
- 압수한 기록매체를 분석 하려고 하자 암호화와 패스워드 설정이 되어있어 데이터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해독하려고 하면 기록이 지워지는 것도 있었음. 자택에서 압수한 용의자의 컴퓨터는 하드 디스크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증거인멸을 꾀한 것으로 판단됨
- 작년 10월부터 3회에 걸쳐 중국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발각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조치를 강구했으며, 자동차 산업 등 민생적 목적으로 중국으로 반출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음

(1-2) 텐소 사건 중국인 사원의 입건 단념

(요미우리 신문, 2007년 4월 7일)

- 대형 자동차 부품 회사인 텐소사에서 약 13만 건에 달하는 제품 데이터를 반출한 용의자로 체포된 양루환 사원을 나고야 지검에서 지난 6일 처분을 보류한 채 석방시킴
- 횡령한 업무용 노트북의 가격이 약 6만엔으로 저가이고, 이미 반환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검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여짐
- 아이치현 경찰은 기업기밀의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정 경제방지법위반(영업기밀 침해)의 적용도 검토하였지만, 사건 동거나 실제 데이터의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여 포기함
- 용의자는 사내 규정을 위반하고 컴퓨터를 반출한 일이나 휴대용 하드 디스크 등 기억매체에 데이터를 복사한 것은 인정하지만, 데이터를 유출한 동기에 대해서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텐소사 홍보부는 '아직 처분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할말은 없으며 용의자에 대해서는 이후 사내 방침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밝힘. 한편 용의자는 지난 3월 17일자로 텐소사로부터 해고됨

(2) 일본 경시청, 러시아 연계 반도체 산업스파이 사건 조사

(교도통신, 2005년 10월 20일)

- 일본 경찰은 2005년 10월 러시아 무역대표부 소속 요원이 주도한 군용으로 전용가능한 반도체 기술에 대한 스파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밝힘. 도쿄 경시청은 도시바 자회사의 전직 직원이 러시아

정보요원에게 백만엔을 받고 관련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된
다며 업무상 배임혐의로 관련 서류 일체를 검찰에 송부함

- 조사 결과, 유출자는 도시바 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본인
으로 2004년 봄 도쿄 인근의 전자 전시회에서 러시아 요원을 처
음 알게 되었으며, 러시아 요원과 접촉할 때마다 서류나 메모리
카드를 이용하여 반도체 기술관련 정보를 건넨 것으로 추정함
- 유출된 정보는 '지속적인 게이트 신호에 의한 제어, 단극, 단방향
성의 고속 스위칭 소자(IGBT)' 기술 등의 반도체 관련 기술로, 일
반적으로 상용제품에 쓰이고 있으나 잠수함이나 전투기의 레이더
와 미사일 유도시스템에도 적용됨
- 일본인은 돈이 필요했었다면서 금품수수 및 정보제공 혐의를 순
순히 인정하였고, 회사는 그의 배신으로 큰 타격을 입었음
- 러시아 요원은 2004년 6월 이미 일본을 떠난 후였으며, 스파이 사
건을 담당하는 경시청의 공공안보실은 그가 다시는 입국하지 못
하도록 외무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3) 러시아에 기밀 정보 제공한 니콘 전직사원 서류 송검
(Techno Nikkei web, 2002년 11월 14일)

- 전 재일 러시아 통상대표부원이 대형 정밀기기 회사인 니콘사의
전직사원과 접촉하여 광통신에 이용되는 광학소재 기밀을 입수한
사건으로, 경시청 공안부는 10일 절도혐의로 관련자들을 서류를
송검할 예정임
- 공안부는 이미 러시아로 귀국한 전 통상대표부원이 첩보기관인
GRU의 일원으로 일본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
고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광학소재 기밀을 수집할
목적으로 접촉을 꾀했다고 보고 있음. 이를 위해 전 통상대표부원
은 도내에서 자주 니콘사의 전직직원과 접촉하였으며 전직 직원

은 올 봄에 퇴직함

- 러시아 스파이들은 일반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자료를 건네 받는 'Flash Contact'이란 수법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음식점 등에서 접촉하면서 정보를 입수하는 케이스가 많아짐
- 러시아 통상대표부원에 의한 정보 수집활동은 작년 10월에도 경시청公安부에 의해 적발된 바가 있으며, 이는 러시아 통상대표부원이 대형 전기 회사의 자회사 사원과 도내의 이자카야 등지에서 접촉을 반복하면서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기밀 정보를 입수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건넨 경우임

(4) 나카무라씨, 미국에서 니치아 화학공업에 승소, 기업 기밀 유출을 둘러싼 재판 종결

(Techno Nikkei web, 2002년 11월 14일)

- 전 니치아 화학공업의 기술자이자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UCSB) 대학 교수인 나카무라 슈지가 니치아 화학공업에 재직할 당시 취득한 특허(특허 제2628404호)를 회사에 양도하면서 '상당한 대가'에 대한 금액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심리가 2002년 11월 19일 도쿄지방법재판소에서 시작됨
- 한편, 같은 내용의 미국에서의 재판은 2002년 11월 6일 니치아 화학공업과 미국 Cree, Inc.가 화해에 합의함으로써 종결됨
- 이미 2002년 10월 10일 나카무라씨가 승소한 것으로 밝혀진 미국 재판은, 니치아 화학공업이 Cree사와 Cree사 자회사인 Cree Lighting Co., 미국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NCSU), 나카무라씨 등을 North Carolina 주 동부 연방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사건이며, 니치아 화학공업은 나카무라씨가 기업기밀을 Cree사측에 누설하였고 Cree사는 그 기밀 정보를 부정사용 하였다고 주장함

- 당시 미재판소는 니치아 화학공업 측에 나카무라가 누설한 기업 기밀을 구체적으로 특정지을 것을 요구하였고, 니치아 화학공업은 증거서면을 제출했지만 재판소는 그 증거서면으로부터 나카무라씨가 누설한 기업기밀이나 부정사용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이에 미국 재판소는 소송의 쟁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니치아 화학공업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나카무라씨가 승소함

3. 프랑스

(1) Michelin사 산업스파이 충격

(프랑스 국영방송 TF1, 2005년 10월 18일)

- 세계적인 타이어 제조업체인 프랑스 Michelin사는 지난 월요일, Z BTO 타이어를 일본랠리 기간인 토요일 밤과 일요일 사이에 오비히로 보조 주차장에서 도난당했다고 밝힘
- 4월에 있었던 뉴질랜드 랠리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6번이나 되는 테스트를 통과한 Michelin사의 “매직타이어 Z BTO”는 세바스티앙 뢰브(Sébastien Loeb)가 세계 타이틀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음
- Michelin사의 랠리 프로그램 책임자인 에이메(Aimé)는 수상한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유사한 제품의 타이어가 배달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하면서, 다음 달 열리는 세계 랠리 챔피언십에서는 BTO 타이어의 복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 Michelin사는 이번 도난이 처음이 아니며, 아일랜드 몽텔로 공원 경주에서 슈퍼바이크 자동차 타이어에 대해 이미 같은 공격을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함

(2) Chinese Girl Summoned for Questioning over Espionage Case in France

(All-China Women's Federation, August 01, 2007)

- 24세의 중국 여학생 Li Li가 VALEO사의 영업기밀을 훔친 혐의로 프랑스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있는 사건임
- 피의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프랑스에 입국했으며, 2005년 프랑스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VALEO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기 시작함
- 그녀는 신의성실의 원칙위배와 회사 정보시스템에 침입한 혐의로 선배 동료직원에게 의해 기소되었는데, 그녀가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Hubei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강한 의심을 받게 됨
- Li는 회사 컴퓨터에서 그녀의 이동식 하드디스크로 몇몇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회사 기밀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단지 인턴십 리포트를 작성하기 위해 참고 자료로 문서를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Li가 다운로드 받은 문서들은 BMW 모델 및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의 VALEO의 개발 계획과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 내에서는 이 사건을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으며, 여론도 좋지 않은 형편임

4. 영국

(1) Forensic Computing Uncloak Industrial Espionage

(www.theresister.co.uk, 2004년 7월 15일)

- British Midland Tools사는 이 회사의 전직 직원들이 회사의 핵심

기술 도안이 담긴 전자 카피본을 훔쳐 Midland International Tooling Ltd(MIT)사에 입사한 사실을 입증해 줄 것을 컴퓨터 과학수사 회사인 Vogon International에 의뢰함

- British Midland Tools사는 경쟁사인 MIT사가 자신들의 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근거리 내에 자신들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새롭게 차린 것을 보고 의심하기 시작함
- 용의자들이 전자 도면을 훔쳐 MIT사로 이직한 뒤, 약 3백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British Midland Tools사의 고객 유치에 British Midland Tools사는 MIT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됨
- Vogon사의 수사관들은 MIT사에 대한 수색 명령과 더불어 수색 체포 과정에서 British Midland Tools사의 복제품임을 입증하는 제품임을 입증하는 MIT사의 AutoCAD 시스템을 확보함
- MIT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제품 도안이 이미 2000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 결과 도안은 2002년 이후 British Midland Tools사의 컴퓨터로부터 MIT사의 컴퓨터로 정교하게 복제된 것으로 밝혀짐

(2) U.K police arrest two linked to computer espionage case

(www.thestandard.com, 2005년 5월 31일)

- 런던 경찰은 기업의 비밀자료를 훔치기 위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이스라엘 산업 스파이로 추정되는 컴퓨터 컨설턴트 Michael Haephrati와 그의 아내 Ruth Haephrati를 체포함
- 이들은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산업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과 기업 중역들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됨
- Michael은 스파이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트로이 목마(Trojan

Horse)로 알려진 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이메일로 첨부하여 기업들의 컴퓨터로 발송함

- 영국에서 이들이 체포되기 전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같은 수법의 일당 18명을 체포한 바 있음

5. 벨기에

(1) 벨기에 법정이 산업스파이 행위 수에즈사를 고소

(로이터통신, 2006년 8월 17일)

- 벨기에 법정은 2004년도에 벌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엘렉트라벨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되는 수에즈사와 5명의 프랑스 산업스파이를 기소함
- 이들은 스파이 활동과 해킹을 선동하고,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가로채려는 것에 대해 기소되었으며, 검사는 이들이 개인에 따라 6개월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과 각각 20만유로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밝힘
- 수에즈사는 지난 일 년 동안 100% 프랑스 혈통으로 구성된 엘렉트라벨사의 소규모 주식들을 사들였고, 벨기에 전자관련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뿐이라고 설명함
- 검사는 다섯 명 중 세 사람은 두 회사에 결코 고용된 적이 없었던 반면, 한 명은 수에즈사에서 일했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엘렉트라벨사에서 일했었다고 밝힘

제 4 장 기술유출 사전 대응방안

제1절 영업비밀 보호

□ 영업비밀의 개념

-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기술정보 : 생산 및 제조공정, 제조방법 등

<표4-1> 기술상의 영업비밀

대 상	설 명	비 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중요 공장의 설계도면, 기계장치의 배치도, 제품 생산 라인의 설계도, 공정 설계도	그 회사만의 독자적이며, 미공개된 정보나 자료
물건의 생산 및 제조방법	제품의 생산, 가공, 조립 또는 제조 방법으로 비법이거나 미공개된 것	-
물질의 배합방법	물질을 생성하는 반응순서, 원료의 배합순서, 배합비율, 시차 등으로서도 미공개 되고, Reverse Engineering으로 알아낼 수 없는 것	식품이나 음식의 제조비법, 의약품이나 화공약품의 제조생산 방법 등
연구개발 보고서 및 데이터	연구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연구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자료도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

실험 데이터	개발 중인 시제품 또는 시제품의 성능 실험, 의약품의 효능 시험, 기계장치의 시운전 데이터 등	-
시설, 기계설비, 장비	기업이나 개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시설, 특수 장비와 설비 등	시설과 지역을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을 제한하여 비밀로 관리

- 경영정보 : 마케팅 전략,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계획 등

<표4-2> 경영상의 영업비밀

대 상	설 명	비 고
각종 주요계획	경영전략, 신규 투자계획, 신제품 개발/생산계획, 마케팅/판매계획, 인력수급계획 등	공개되면 경쟁업체의 대응이 있을 수 있는 계획은 영업비밀로 지정
고객 명부	지역별 고객리스트, 연령별 또는 직업별 분류표 및 대리점/영업점의 제반 영업자료 등	고객정보의 유출은 개인 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음
관리 정보	원가분석, 마진율, 거래처 정보, 인사/재무관리 및 경영분석 정보 등	공개되면 자사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경쟁회사에 유리한 정보
매뉴얼 등 중요자료	· 그 기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방법 기술 서류 · 그 회사만의 독특한 방법이나 기법을 담고 있는 모든 매뉴얼 등	· 원료 투입순서, 화합물의 반응방법, 합성방법 등 · 판매기법, 고객 접근 및 설득방법, 시장 조사방법, 원가산정방법 등

□ 영업비밀의 요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의 정의규정에서는 영업비밀의 개념적 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건을 들고 있으며, 이는 영업비밀 침해시 법적인 사후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임

1) 비공지성

- 영업비밀이 본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술 등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어야 함
-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을 의미
- 다만 보유자 이외의 타인이 당해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자와의 사이에 비밀준수의 의무가 형성된 경우라면 비공지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보유자와 무관한 제3자가 독자개발 등에 의해 동일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그 제3자가 당해 정보를 비밀로서 유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비공지 상태의 정보라고 할 수 있음

2) 경제적 유용성

-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이는 특정한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게 대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 또는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
- 또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 또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탈세방법·공해물질의 배출방법 등 반사회적인 정보 및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보는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음

3) 비밀관리성

- 경제적 유용성을 지닌 비공지 상태의 기술·경영정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 소유자의 비밀성 유지를 위한 관리상태가 지속되어 있어야 함(영업비밀 소유자의 관리의사와 관리노력)
- 어느 경우에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대략 다음과 같음
 - 당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하거나, 접근자에게는 그 정보를 사용·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 당해 정보에 비밀표시를 하여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이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는 경우
 - 당해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공간적·물리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등
- 그러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정보는 물적인 매체(서류, 디스크, 필름 등)에 체화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억에 의한 것도 있으므로 반드시 위 방안이 동시에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님
 - 예컨대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해서 산업스파이 등 외부자의 침해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에 비밀준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종업원이 이를 타기업에 유출시키는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님

제2절 지식재산 권리화 및 보호

1.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

□ 산업재산권의 개념

-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연구결과)이나 창작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을 의미함
-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 등에 대하여 그 발명자 및 승계인 등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함

□ 산업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 확보
 -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독점배타적인 무체재산권으로 신용창출, 소비자의 신뢰도 향상 및 기술판매를 통한 로열티 수입이 가능함
- 특허분쟁의 사전 예방
 - 자신의 발명 및 개발기술을 적시에 출원하여 권리화함으로써 타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법적보호가 가능함
-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개발의 원천
 - 막대한 기술개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며 확보된 권리를 바탕으로 타인과 분쟁 없이 추가 응용 기술개발 가능
-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각종 벤처기업 지원 혜택을 비롯하여 각종 정부자금 활용과 세제지원 혜택

□ 산업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이 중 특허권이 대표적임

<표4-3>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정의	예시	존속기간
특허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것(대발명)	벨이 전자를 응용하여 처음으로 전화기를 생각해 낸 것과 같은 발명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20년까지
실용신안	물건에 대한 간단한 고안(소발명)이나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분리된 송수화기를 하나로 하여 편리하게 한 것과 같은 형상이나 구조 등에 관한 고안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까지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	탁상전화기를 반구형이나 네모꼴로 한 것과 같이 물품의 외관에 대한 형상, 모양, 색채에 관한 디자인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
상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호, 문자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	전화기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이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표장으로서의 상호, 마크 등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 가능, 반영구적 권리)

2. 지식재산 권리의 보호

□ 담당부서 설치 및 전담자 지정

- 특허분쟁의 발생시 경영진을 보좌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기대응을 위해서는 사내에 특허담당부서의 설치가 선결되어야 함
-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상 특허담당부서를 설치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자사 특허기술 분석, 경쟁기업의 특허활동 감시, 장래 분쟁 가능성 대비를 위해 특허전담자를 지정하는 노력이 필수적임

□ 제품출시보다 특허출원 우선

- 특허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이미 일반에 알려진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음
- 따라서 새로 개발한 기술을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제품 출시 또는 팜플렛을 통한 광고 등을 통하여 공개하게 되면 추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공개 이전에 특허 출원을 먼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제품출시 또는 제품광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경쟁업체에게 뜻밖의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됨

(사례) 일본의 마루나사 vs 나성준 사건

- 일본의 마루나사는 마루나 연사기에 관한 실용신안을 일본 및 한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음
- 그 후 한국의 나성준이 동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마루나사가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이 제품의 카타로그 및 팜플렛을 한국에 다량 배포하여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음

제3절 영업비밀과 특허의 비교

□ 영업비밀과 특허의 법적 차이

- 영업비밀(노하우)은 비밀성과 유용성이 있는 기술정보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음
 - 해당기술이 이미 알려진 제품을 보다 경쟁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제조공법이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드 등은 생산설비나 제품을 분석하여도 해당 기술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영업비밀로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함⁵⁾
- 특허는 특허권자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만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배타권이므로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실시하면 권리침해가 됨
 - 의약품이나 제조품처럼 해당기술의 내용이 신제품과 일치하고 제품을 분석하면 기술내용을 알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표4-4> 영업비밀과 특허의 법적 차이

구 분	영업비밀(노하우)	특 허
법적 성격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사실상태 보호	공개대가로 부여되는 독점권
보호대상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자연법칙을 이용한 고도한 기술적 사상(신기술)

5) 日本 發明協會編, ライセンス契約實務ハンドブック, 56面.

절차/기간	· 등록 불필요 · 비밀이 알려질 때까지	· 등록 필요 · 출원일로부터 20년
독점성	· 동일 영업비밀 병존 가능 · 권리행사에 제한 없음	· 동일특허권 병존 불가 · 권리행사에 제한 있음 (강제, 법정실시권 등)
침해행위	· 절취, 기망 등 부정취득행위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공개행위 ·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사용, 공개행위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권을 영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
관련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 영업비밀과 특허의 장·단점

- 일반적인 기술보호 수단으로 특허권 취득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법적 보호가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개에 의하여 기술내용이 해외에도 알려지게 되고 특허권의 효력이 출원한 국가에만 미친다는 단점이 존재함
- 한편, 영업비밀의 경우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하고, 특허출원이나 권리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나, 독점성이 없고 기업의 관리능력에 효력이 좌우된다는 단점이 존재함

<표4-5> 영업비밀과 특허의 장·단점

구 분	영업비밀(노하우)	특 허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밀로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유효 · 특허출원 절차의 번거로움 및 권리화에 추가비용 없음 · 기술내용 미공개로 인해 기술경쟁우위의 유지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한 배타적 독점권 보장 · 기술가치 상승
단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비밀유지노력 등 관리능력에 효력 좌우 · 독점성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화에 추가비용 발생 · 기술이 공개됨 · 등록국가에서만 유효 · 유효기간이 제한됨

□ 기술보호에 대한 판단기준

○ 특허로 보호

- 대상기술이 장래 표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이나, 대상기술과 제품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품에 가까운 기술일수록 특허로 보호할 필요
- 자사의 기술수준이 경쟁회사에 비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아서 대상기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대상기술의 예상수명이 특허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취득을 통한 보호가 바람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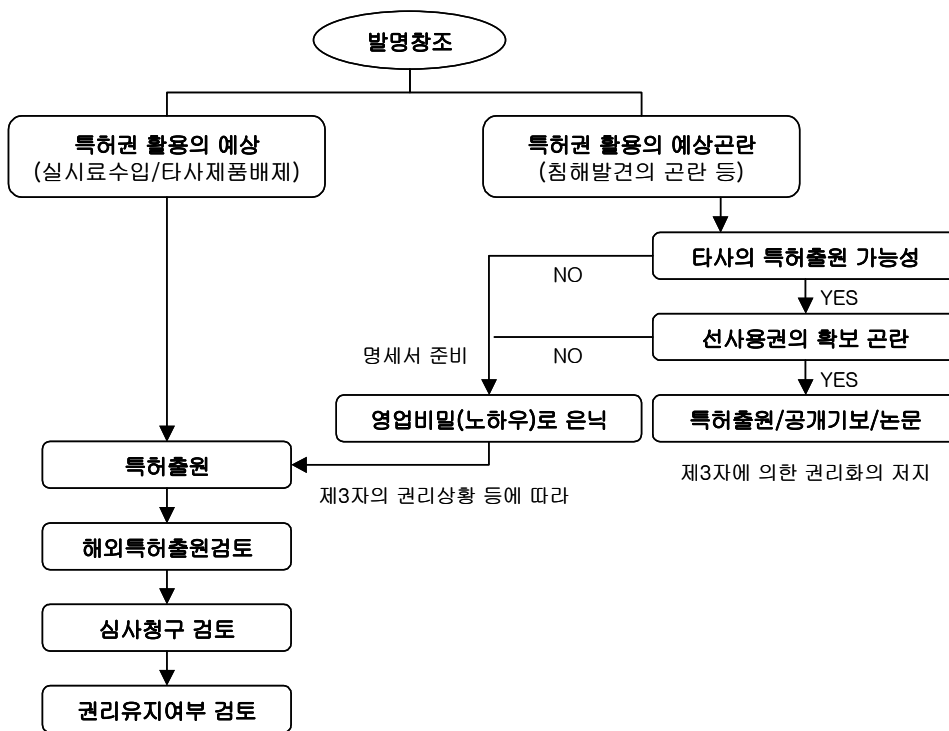
○ 영업비밀로 보호

- '타사의 독자개발이 곤란한 기술'이나 '특허권의 침해발견이 곤란한 기술'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타사에 제조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기업, 인재의 유

동성이 높은 기업 등 영업비밀로서 계속 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해외 추진사업의 경우에는 비밀관리의 곤란성이나 해당 국가의 법, 제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선택이 요구됨

-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업의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허법상 인정되는 선사용권⁶⁾의 증거확보 필요
-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로 발견할 수 없는 기술, 예를 들어 계측방법, 계측장치, 제어알고리즘 등과 같이 역설계를 해도 타사의 침해를 발견할 수 없는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

<그림4-1> 기술의 보호관리 방법



6) 특허출원 전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발명 및 사업의 목적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갖는데, 이러한 권리를 선사용권이라 함

제4절 사내 보안관리

□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시행

- 기업의 비밀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안 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
- 보안업무의 분류,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비밀정보의 취급과 관리, 비밀 분류기준,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등이 언급되어 있어야 함
- 보안관리규정 사례는 <부록1> 참조

□ 인적보안 관리

○ 종업원 입사시

1) 보안 서약서 징구

- 재직 중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 명기
- 재직 중 작성·개발한 특허나 논문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이 회사의 소유임을 명기하고, 영업비밀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법적 분쟁여지를 사전에 차단
- 입사시 근로계약서에 보안서약 내용을 포함해도 무방하나, 회사와 근로자간의 책임한계를 서약서에서 명확히 해야 함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2-1> 참조

2) 보안교육 실시

- 보안업무 규정 또는 지침, 사내·외 발생 보안사고 사례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 필요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한 보안 무료교육 수강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3) 경력자 채용시 조치사항

- 연구개발직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비밀유지서약이나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무시할 경우 경력자 본인은 물론 채용한 업체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라목의 중과실에 의한 침해)가 될 수 있음
- 가능하면 경력자를 전직회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무수행 중에 전직회사 비밀의 사용을 금지하는 서약을 입사시에 받으면 전직회사의 영업비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줌으로써 분쟁 예방에 노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경력자는 전직회사의 임직원들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으므로 고의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제공할 개연성이 많으며, 위장취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 태도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종업원 재직 중

1) 보안 서약서 징구

-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안서약서를 함께 징구하여 지속적으로 보안의 중요성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음
- 회사에서 수행하는 중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필요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2-1> 참조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 등에서 중소기업을 위한 보안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향후 교육기관 및 교육횟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제품개발 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보상시스템 설계

- 기업의 입장에서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은 외부로부터의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임
-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수 인력의 보상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보상재원 배분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기술개발, 특허신청, 시제품 출시단계, 양산 등 단계별로 보상을 확대 실시하고, 양산 시점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경쟁사에서 탐내는 기술 역시 양산이 가능하여 당장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고객에게 인정받는 기술이며, 이 시기에 인력유출 시도 또한 가장 많이 나타남

3) 보안교육 실시

- 보안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으나, 직원들의 관심을 끌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도 필요함
- 사내 보안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내외 보안교육 종료시 참석자 서명 및 수료증 발급 등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회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보안점검 실시

- 보안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 후 임직원들의 보안실천이 보다 중요함
- 정기,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한 후 보안우수자 및 위반자에 대해 적절한 포상 및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임직원들의 보안의식 제고 및 주의 환기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종업원 퇴사시

1) 정보반납 및 개인정보 삭제

- 개인 PC 및 업무관련 자료를 퇴사시 반납하도록 하고, 주요 반출 물품에 대한 검색을 실시
- 개인 PC와 회사 메일계정의 ID 및 패스워드 삭제
- 개인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아무리 관리하더라도 각종 방법으로 유출되기 쉽지만 기본적으로 정보반납 서약 및 규정을 설정해 두면 문제 발생시 유리함

2) 경쟁업체 취업금지서약

- 영업비밀 보유자 등 핵심 인력이 일정 기간 이내에 경쟁업체로 전직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퇴직시 동 내용을 명기
- 퇴직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업종, 분야, 기간을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향후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법적 대응시 유리함에 유의하여야 함
- 하지만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함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2-2> 참조

□ 외부 보안관리

○ 협력업체 및 실무자

-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업무 수행시 업체간에는 물론 실무자와도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비밀유지기간, 생산된 비밀의 귀속문제, 비밀침해의 책임, 비밀의 취급 및 관리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2-3>, <부록2-4> 참조

- 제품 구매자 등
 - 제품소개, 구매상담, 공장견학 등에 있어서 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기술자료 및 홍보 팜플렛 등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
- 외부 자문인력
 - 컨설턴트, 고문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자문인력의 경우 경쟁업체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과도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함
 - 일부 업종은 법으로 비밀유지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로 하는 것이 보다 완벽하며, 계약체결시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및 관련 법규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규정을 명확히 기재
 - 업무상 제공한 자료는 가급적 회수하거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으로 전문가에게 교육

□ 정보 보안관리

- 개인용 PC
 - 개인별 컴퓨터에 ID 및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되 '1234' 등 쉽게 유추할 수 있는 패스워드 사용 지양
 - 개인 PC별 화면보호기 및 전용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화면보호기 작동시간을 적절하게 지정
 - 컴퓨터바이러스에 취약한 개인용 PC에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대부분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이 보유한 자동 업그레이드와 예약점검 기능을 적극 활용
- DRM 시스템 활용
 - 회사의 기밀이 되는 정보자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접근 권한의 적절한 부여와 통합인증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권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휴대용 PC 및 이동식 저장장치

- 인가되지 않은 개인용 노트북 사용을 금하고, 초기 동작시 사용자 식별 및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조치
- 노트북의 하드 디스크 내에는 중요정보의 저장을 금지하고, 이동식 저장장치의 사용을 통제
- 노트북 및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자에게 대한 보안 서약서 징구
-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2-5>, <부록2-6> 참조

제5절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사전신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⁸⁾

○ 제정배경

- 최근 들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단독으로 또는 기업과 공동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개발성과의 유출시 이러한 기관들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 아니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려움
-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해외에 매각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경우 적절히 규제할 필요성이 커짐

8)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함. 산업기술보호법은 2006년 10월 27일 법률 제8062호로 제정되었으며, 200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음

○ 주요 내용

-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 주로 사후 대책을 다룬데 반해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짐
- 법의 주요 내용은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정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 및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산업기술보호협회 설립 등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산업기술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및 ⑤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절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사전신고에 관해 주로 살펴보기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부록6> 법령 전문 참조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운영

○ 국가핵심기술의 개념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산업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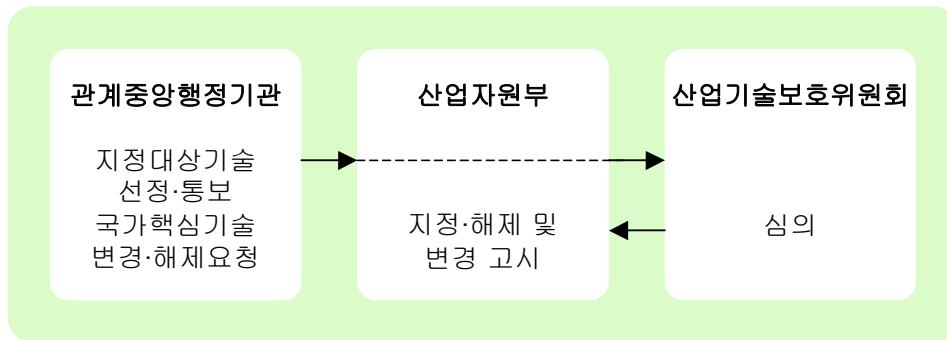
○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운영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산업기술을 대상으로 필요 최소한의 지정 대상기술을 선정하면,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 선정기준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

- 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
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 제공

<그림4-2>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및 운영절차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사전신고

- 정부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수출에 대한 사전승인 또는 사전 신고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함
 - 국가가 지원하여 개발한 핵심기술의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
 - 민간 자체개발한 핵심기술의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에 사전신고
-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실시
 -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중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함
- 위반시 벌칙
 -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

<그림4-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및 신고절차



□ 국가핵심기술 지정 현황

- 정부는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과 미세공정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의 설계·공정·조립기술 등 40개 기술에 대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함(2007. 8. 21)
- 전기전자 4개, 자동차 8개, 철강 6개, 조선 7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6개, 우주 5개

제6절 해외진출 기업

□ 해외 진출 시 기술이전

○ 진출형태

- 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의 해외이전은 독립법인 형태로 진출하여 자체 보호함으로써 유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함
- 합작법인 형태를 통한 진출시 합작기업 역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전할 기술과 보호할 기술을 명확히 하고 보호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하여야 함

○ 진출목적

- 첨단제품과 기술은 지적재산권 보호가 우수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노동집약적이거나 비핵심 사업의 경우 해외 생산을 목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므로 보편화된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임. 하지만 중요기술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국가가 기술에 대한 권리보호에 취약하므로 별도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해외 기술이전시 기술보호

○ 보호전략

- 기술을 영업비밀로 보호하고자 할 때에는 철저한 보호대책이 먼저 마련되어야 함
- 국내에서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는 기술이라도 지적재산권 제도가 미흡한 국가에 진출할 때에는 사전에 특허를 출원하여 권리화를 완료한 후에 진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허 등을 통한 권리화도 중요하지만 생산공정, 상세기술, 운영기술 등 영업비밀로 보호할 기술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전할 기술의 가치평가와 기술이전시 예상수익, 현지 국가의 법률과 제도로 이전할 기술의 보호가 가능한지를 먼저 분석한 후 이전

○ 현지 적응전략

- 성공적인 해외 진출 및 기술보호를 위해서는 글로벌 인적자원관리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현지 채용인력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가 중요함
- 현지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비밀 유출 및 침해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현지 파트너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 해외 진출시 인적자원관리

○ 내국인과 현지인의 업무구분

-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대부분이 현지인이므로 기술유출 및 침해의 위험성이 높음
- 생산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현지인이더라도 핵심기술 및 시설의 보호담당은 내국인이 맡아야 함

○ 입사, 재직, 퇴사 등 단계별 보안관리

- 현지 채용인력의 경우 가능한 비밀정보에의 접근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접근해야 하는 인력 채용시에는 당사자의 신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국내외를 막론하고 재직자를 통한 기밀유출이 많으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함

-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보안 서약서 징구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교육 실시
- 퇴직자는 그 나라의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모든 국가의 보편적 계약에 의해 영업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재직 중에 영업비밀을 취급하였거나 관리한 적이 있어야 하며, 영업비밀을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퇴직 후에도 있다는 선행 서약이 있어야 함
- * 중국 노동계약법(2008. 1. 1. 시행예정) 제23조와 제24조에는 중국 최초로 경쟁업체 취업 제한과 관련하여 회사(고용주)와 직원간의 비밀유지 범위, 경제적 보상, 기한 등 계약조항을 명시하여 영업비밀보호 강도가 높아짐
- 입사자(재직자 포함), 퇴사자에 대한 보안 서약서의 내용은 <부록3> 참조(중문)

제 5 장 기술유출 사후 대응방안

제1절 퇴직자의 창업 또는 경쟁업체 취업

□ 퇴직자에 대한 협조공문

- 비밀유지 서약을 한 퇴직자가 창업을 한 경우에는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경쟁업체에 취업한 경우에는 퇴직자와 취업한 회사에 비밀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 서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표5-1> 퇴직자에 대한 협조공문 요지

○○○ 님 귀하

귀하는 우리 회사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유지 및 보호하기 위해 1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귀하가 경쟁업체인 꽃미남 사에 취업을 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밀유지서약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회신을 ○○○○년 ○월 ○일 까지 부탁드립니다.

□ 영업비밀보호 관련 협조공문

- 퇴직자와 함께 퇴직자를 채용한 경쟁업체에도 경고 또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함
- 퇴직자와 채용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때에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분쟁 발생시에 유리한 증거가 됨

<표5-2> 영업비밀보호 관련 협조공문 요지

○○○ 주식회사(퇴직자를 채용한 업체)
대표이사 귀하

귀사에 취업한 ○○○는 우리 회사에 근무하면서 중요한 영업비밀을 알고 있으므로 영업비밀유지를 위하여 1년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기로 서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귀사가 ○○○를 채용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 퇴직자 ○○○를 취업제한기간인 ○○○○년 ○○월 ○○일까지는 귀사에 취업시키지 않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의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고 귀사의 의사를 ○○○○년 ○월 ○일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절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 6가지 유형을 '부정취득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비밀유지 의무자의 부정공개 관련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부정취득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 ① 영업비밀을 부정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
- ② 부정취득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③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해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부정공개행위와 관련된 침해행위

- ① 영업비밀을 부정 공개·사용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

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을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부정공개된 영업비밀을 악의·중과실로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③ 선의취득 후 악의·중과실에 의한 사용·공개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1) 민사적 구제수단

① 금지 및 예방청구권(제10조)

-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음

② 손해배상 청구권(제11조)

- 영업비밀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받은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신용회복 청구권(제12조)

- 만약 침해행위로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한 경우,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

2) 형사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18조의 2, 제18조의 3, 제19조)이 규정되어 있음

- ①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누구든지' 형사처벌 가능
- ② 국내유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예비·음모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국외유출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예비·음모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경영상의 영업비밀' 침해도 형사처벌범위에 포함
- ⑤ '양벌규정'을 통해 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침해에 관여한 조직, 기업 등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3) 선의자에 대한 특례

-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규정적용 배제
 - 취득시점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지만 나중에 피해자인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장 등을 받음으로써 그 후부터 영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존재에 대하여 알게 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임

(2) 형법

① 영업비밀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내부자에 의한 누설

○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

-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처리중 알게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횡령·배임죄(제355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배임죄(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배임죄를 범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없는 제3자에 의한 비밀침해

○ 비밀침해죄(제316조)

-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절도죄(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9조, 제62조)

*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시 형법상의 비밀침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나 특별법인 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통신비밀보호법

- 전기통신·우편·대화 등을 통하여 송·수신되는 영업비밀을 감청·녹음하거나 또는 그 취득한 내용을 공개·누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제3조, 제16조)

(5)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 타인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전송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9조, 제46조)

제3절 지식재산권 침해

□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경고장 송부

- 경쟁업체나 제3자가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가장 먼저 침해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예: 물품, 카탈로그, 팜플렛 등)를 수집하고, 그 다음으로 침해품의 생산·판매 현황 및 침해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조사해야 함
- 증거조사 결과 수집한 대상물이 자사의 특허발명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중하게 침해의 입증 방법을 모색해야 함
 - 침해의 입증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공격받을 수 있음
- 자사 권리침해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상대방에게 침해사실을 경고해야 함
 - 경고는 통상 서면으로 행하고, 경고장에 특허번호, 공고번호, 발명의 명칭, 침해품 및 회답기한 등을 명시하여 통상 내용증명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함
- 경고장 송부는 특허권 등의 권리를 이용해서 경쟁업체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거나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방지하여 자사 제품의 시장점유율 관리 혹은 시장 선점에 유리하다는 이점이 존재함
 - 하지만 침해피의자가 제조업자인 경우, 그 거래처인 유통·판매업자에게 경고하는 경우나 신문·업계소식지 등에 광고하여 경고하는 경우, 나중에 특허침해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허위 사실의 고지 및 유포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 경고장의 내용은 <부록4> 참조

□ 분쟁발생시 구제수단

- 특허관련사건(발생, 변경, 소멸 및 권리범위 등)의 분쟁은 전문적인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므로 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심은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하고, 불복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상고하게 되는 심급구조를 취함

(1) 소송 및 심판

1) 행정적 구제수단 - 권리범위확인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등록된 특허권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기술이 당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제도를 의미함
-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정권리의 내용범위의 확인이라는 권리의 내재적, 포괄적 확정이 아니라 특정권리와 분쟁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사용 특허권과의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권리의 충돌 또는 마찰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사안별로 가리는 제도로써, 심결을 빠른 시기에 얻을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매우 큼
- 변리사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의 결과는 침해소송의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있으므로, 침해소송의 제기에 앞서 변리사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결과를 확인한 후 침해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소송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2) 민사적 구제수단

특허침해 등의 분쟁해결을 위해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처분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함

① 금지 및 예방청구권(특허법 제126조)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의 내용 :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② 손해배상 청구권(특허법 제128조)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신용회복 청구권(특허법 제131조)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특허발명을 침해하여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때에는 법원에 신용회복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신용회복조치 방법 : 신문, 잡지 등의 권리자의 승소사실 게재 등

④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민법 제741조)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음

⑤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 법원은 특허권자의 신청에 의해 제소 전후를 불문하고 본안에 관한 최종 심리 이전의 단계에서 침해피의자에게 잠정적으로 침해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이며, 특허권의 침해여부가 판단되어 가처분이 인정되면 침해피의자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므로, 특허권자에게는 매우 실효적이고, 강력한 공격수단이 될 수 있음

3) 형사적 구제수단

- 특허침해 등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해 징역, 벌금, 몰수등의 형사적 구제수단이 존재함

① 특허권 침해죄(특허법 제225조)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친고죄로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며, 고의범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함

② 몰수(특허법 제231조)

-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해야 함
- 피해자는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③ 양벌죄(특허법 제230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임무와 관련하여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詐僞行爲)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
- 법인의 경우 침해죄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허위표시와 사위행위의 죄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소송 이외의 해결제도(ADR)

- 소송제기에 의한 해결 이외에, 재판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분쟁해결 수단(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짐
 - 신속하고 비용측면에서 경제적임
 - 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을 들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 소송 절차에 의하여 공개될 수 있는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 가능
 -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분쟁의 조기해결 가능
- 소송의 경우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강제적인 분쟁해결 방법이나, ADR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해결이 가능함
- ADR에는 중재, 조정, 알선, 화해 등의 형태가 존재하며, 국내에서의 활용비율은 아직까지 그다지 높지 않음

1) 중재(Arbitration)

- 중재는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대한상사중재원⁹⁾이 대표적임
-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 판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존재하지 않음

2) 조정(Mediation)

- 조정은 중재와 마찬가지로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성립한 화해의 효력은 민법상의 화해(민법 제731조)와 동일함
- 중재의 경우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당사자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조정의 경우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에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음

9) www.kcab.or.kr

3) 알선(Conciliation)

- 알선은 제3자가 당사자들의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당사자 상호간의 자주적 해결을 통해 합의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하는 절차를 의미함
- 알선 결과 성립한 화해의 효력은 조정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분쟁처리의 초기적 단계에서 주로 활용됨

4) 화해(Compromise)

- 당사자 쌍방의 상호 양보를 전제로 분쟁 해결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합의를 화해라고 함
- 화해는 민법상의 계약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으며(민법 제731조),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는 것만 아니라 법원에서 화해를 하고 그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민사소송법 제231조)
-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절차 중에 하는 소송상의 화해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하는 제소전의 화해를 포함함

제4절 해외진출 기업(중국)

- 중국은 2004년부터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며, 4만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진출하여 총 2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음
- 대 중국 투자는 고임금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던 국내기업들에게 새로운 생존기반을 제공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지만 매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최근 들어 중국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인해 한·중간의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기술이전 압박도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절에서는 중국진출 국내기업의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침해시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함

1. 영업비밀 침해

□ 영업비밀의 개념

-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4항은 영업비밀에 대해 ① 공중이 알지 못하고(비공지성), ②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구비한 동시에(경제적 유용성), ③ 권리자가 비밀조치(비밀관리성)를 취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라고 규정

□ 영업비밀의 요건

- 1995년 개정된 ‘영업비밀 침해금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영업비밀의 구성요건을 아래와 같이 4가지로 세분하여 규정

1) 공중이 알지 못하는 것

- 그 정보가 공개된 경로를 통해 직접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즉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모르는 것을 의미

2)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

- 권리자에게 현실적 혹은 잠재적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상 우위를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
- * 동 규정 제2조 제5항에서는 설계, 절차, 제품의 배합, 제조방법 및 기술, 관리비결, 고객명단, 원재료 등의 출처정보, 판매전략, 원가계산서, 입찰서의 최저가격과 그 내용 등을 예시

3) 실용성을 구비한 것

- 정보가 객관적 유용성을 구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면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
- * 실용성은 경제적 가치의 기초로서 실용성이 없으면 경제적 가치도 없음

4) 비밀조치를 취할 것

- 사용자와 종업원 또는 거래처와의 비밀유지계약, 회사 내의 비밀 유지제도, 기타 합리적인 비밀 유지조치¹⁰⁾ 등을 포함

□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영업비밀의 침해행위 유형은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1) 부정한 수단에 의한 영업비밀의 취득(제10조 제1항 제1호)

- 절도·유혹·협박 또는 그 외의 부정한 수단에 의해 권리자의 영업비밀 취득

2) 부정한 수단에 의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사용·공개(제10조 제1항 제2호)

- 부정한 수단에 의해 취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개·사용하고 타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

3) 비밀유지 요구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영업비밀 사용 공개(제10조 제1항 제3호)

-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영업비밀의 유지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을 공개·사용

4) 악의의 제3자에 의한 침해(제10조 제2항)

- 전항에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거나 지득한 제3자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또는 공개

5) 선의의 제3자의 문제

- 불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계약을 위반해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자의 행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는 것은 선의로 보나,

10) '기타 합리적인 비밀유지 조치'에는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비밀유지를 위한 협의,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있는 종업원 또는 업무관련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 요구 등이 해당(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工商工字 제109호)

- 권리자가 선의의 취득자에게 영업비밀임을 통지한 후 제3자에게 공개 사용한 경우에는 선의에서 악의로 전환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수단

(1) 행정적 구제수단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행정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국가공상국')에 신청하면 됨
 - 영업비밀권리자가 국가공상국에 행정구제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① 피신청인(침해자)이 사용한 정보가 자신의 영업비밀과 일치한다는 것과 ② 피신청인이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한 상황(퇴직 종업원, 업무관련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됨
 - 피신청인은 자기가 사용한 정보에 대해 합법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국가공상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피신청인의 침해행위가 인정됨

(2) 민사적 구제수단

- 반부정당경쟁법 제20조
 -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정 경쟁행위 조사를 위해 지출한 합리적 비용의 배상책임을 부여
 - 영업비밀권자에게는 그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자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침해중지 청구, 원상회복 청구, 사죄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 인정

(2) 형사적 구제수단

- 반부정당경쟁법 제25조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침해중지 명령을 해야 하고, 사건 정황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형법 제219조

- 반부정당경쟁법 제10조에 열거된 침해행위를 행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함
- 특별히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식재산권 침해

□ 지식재산권 침해 감시 및 단속

(1) 일반 행정기관에 의뢰

- 공상행정관리국(工商行政管理局)은 상표권 침해 및 위조품에 대한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침해자 및 침해제품의 발견을 의뢰할 수 있음
- 반면 특허권의 침해자 및 침해제품의 발견은 지식산권국(知識產權局)에서 담당함
- 제품품질법에 위반되는 혐의가 있으면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查檢疫總局)이 조사 및 증거수집 과정에서 상표권 및 특허권 침해사실을 적발할 수 있음

(2) 공안국, 인민검찰원에 고소

- 특허권과 상표권의 침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안국, 인민검찰원에 고소하여 침해자 및 침해제품의 적발을 의뢰할 수 있음
- 하지만 법적으로 형사입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민간기관에 의뢰

- 중국에는 특허권, 상표권 등의 침해자 및 침해제품의 적발을 의뢰 받아 처리하는 민간기관이 존재하며, 컨설팅회사, 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임

□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방법

(1) 쌍궤제(雙軌制) 활용

- 중국에서 전리권(특허권 등)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지방정부의 전리관리기관(전리권의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상표권의 경우)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데, 이를 두 개의 수레바퀴를 이용한다고 하여 '쌍궤제(雙軌制)'라고 함
- 다만, 한 곳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어느 곳에 할 것인지는 피침해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음

(2) 전리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침해

-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전리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전리업무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음
- 전리업무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권리침해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불응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전리업무관리부서의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전리업무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전리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타인의 전리를 모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전리업무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함
- 비전리물건을 전리물건으로 사칭하거나 비전리방법을 전리방법으로 사칭하는 경우, 전리업무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이를 공고하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전리권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에 의해 받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하며, 침해소송의 시효는 2년으로 함

(3) 상표권 침해

- 상표 등록자의 허가없이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며,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음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처리할 때 권리침해행위 성립이 인정되면,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권리 침해상품과 사용도구를 몰수, 소각하는 동시에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 공상행정관리부서의 결정에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권리 침해자가 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이행하지도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강제집행 신청 가능

-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전용권 침해에 따른 배상액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중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
-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 침해자가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입은 손실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권리침해 행위 정상에 근거하여 50만 위안 이하의 배상

(4) 인민법원에 제소

- 특허권 침해소송의 경우 2심제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중급 인민법원이 1심을, 고급 인민법원이 2심을 각각 담당함
- 침해행위 중지, 강제집행, 손해배상, 사죄광고를 통한 명예회복 등의 민사적 구제 가능

부 록

1. 보안관리규정 예시문
2. 보안서약서 예시문(국문)
3. 보안서약서 예시문(중문)
4. 경고장 예시문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록1]

보안관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회사 임직원 및 외부 협력업체와 파트너, 기타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자산”이란 “정보와 정보시스템”을 포괄한 개념을 말한다.
3. “정보시스템”이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전산시스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및 각종 영상매체시설물 등 “정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4.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4조 (보안업무의 분류)

1.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해 “일반업무”와 “보안업무”로 구분하고, “보안업무”는 다시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로 구분한다.
2. “시스템보안업무”는 컴퓨터, 통신망 등 주로 컴퓨터를 통하여 진행되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보안업무를 말하며, “일반보안업무”는 그 이외의 모든 부문의 정보보안업무로 정의한다.

제5조 (보안업무의 조직 및 기능)

1. 회사는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영업비밀관리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일반보안업무”와 “시스템보안업무”등 회사내 모든 보안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보안실무책임자를 지정한다.

2. 회사의 보안실무책임자는 보안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지침 등을 수립·조정하며, 영업비밀등급분류, 영업비밀서약서 집행, 보안교육실시 및 기타 영업비밀에 관련한 필요 사항 등을 담당한다.

3. 보안실무책임자는 정기적으로 보안담당 임원 및 최고경영자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전 임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정보의 취급과 관리)

1. 회사는 핵심 영업비밀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2. 핵심영업비밀로 분류된 각종 서류 및 자료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한다.

3. 핵심영업비밀 자료와 주요 시설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이를 관리하는 보호구역을 선정할 수 있으며, CCTV와 시건장치 설치 및 기타 출입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제7조 (비밀분류기준)

1.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 중요도에 따라 “극비”, “대외비”, “일반” 등 3 단계로 분류한다.

2. “극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영업비밀”을 말한다.

① 지적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영업비밀

②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영업비밀

③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영업비밀

④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영업비밀

⑤ 기타 회사의 핵심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회사가 판단되는 영업비밀

3. “대외비”란 경쟁사 및 대외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비밀 중 “극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일반”이란 “극비” 또는 “대외비”가 아닌 그 이외의 “정보”를 말한다.

5. 영업비밀분류는 일정 기간마다 새롭게 지정·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다.

제8조 (보안서약서 작성)

1. 모든 임직원은 입회사시와 연봉계약시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다.
2. 회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업체 또는 개인은 매 계약체결시마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한다.
3. 보안실무책임자는 기타 특별관리가 필요한 업무 수행업체 또는 수행자에 대해 별도의 영업비밀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보안 점검의 실시)

1. 회사는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직원과 각 부서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특정 임직원 및 부서를 선정하여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
2. 보안점검결과는 경영자에게 보고되고 회사 전체에 공지되어 자체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0조 (보안 교육의 실시)

1. 모든 임직원은 입사시 사내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2.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3. 보안담당부서 소속 임직원은 반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받도록 한다.
4. 보안교육은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보안규정 위반자 조치사항)

1. 보안규정을 위반한 임직원과 부주의와 과실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행하지 못한 책임자 또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별도의 사규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보안사고 발생시 업무 담당자와 보안 담당자 등은 사건 조사 및 해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입사자/재직자용)

_____본인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재직하면서(휴직기간 포함) 회사의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재직중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회사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체 하지 않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5. 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6. 본인은 재직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7. 본인은 재직중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 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검직하거나 자문하는 등 해당 업체에 협력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8.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9. 본인은 재직중 또는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퇴직자용)

_____본인은 ○○○○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퇴사후 회사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개발, 생산,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이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퇴사후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단,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거나 영업비밀보호관련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는 예외로 함)
3. 본인은 퇴사시 재직중 본인이 취득하거나 관리하고 있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퇴사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 및 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해 회사의 메일통제 및 검열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재직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년간 회사의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창업 또는 취업을 하지 않겠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7.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재직중 지득한 영업비밀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8. 본인은 퇴사 이후에도 회사가 본인의 담당업무와 관련한 권리의 법적조치를 취할 경우 회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규에 따른 조치를 감수할 것은 물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협력업체-기업용)

_____ (이하 “을”)은 ○○○○ 주식회사(이하 “갑”)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갑의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을 및 그 임직원(이하“을 등”) 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갑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을 등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갑이 을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을만이 알고 사용하겠으며,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다.
4. 을은 계약 종료시 갑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을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6. 을 등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갑의 각종 규정 및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7.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을 등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갑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서약자 소속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성명 :

(직인)

○ ○ ○ ○ 주식회사 귀중

영업비밀보호서약서

(협력업체-개인용)

_____본인(이하 “을”)은 ○○○○ 주식회사(이하 “갑”)와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갑의 영업비밀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약기간 중 계약 수행을 위하여 지득한 갑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은 갑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고 갑의 보안규정 및 지침,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겠습니다.
3. 갑이 을의 업무 편의를 위해 제공한 전산 ID 및 패스워드, 출입증 등은 을만이 알고 사용하겠으며, 절대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대여·양도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계약 종료시 갑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제공한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갑에게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계약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작성,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갑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6. 본인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갑의 각종 규정 및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만일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해 갑과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갑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_____(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영업비밀보호서약서

(NOTE PC 사용자용)

_____본인은 ○○○○ 주식회사 (이하 “회사”)내에서 NOTE PC를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정된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NOTE PC를 사용, 휴대,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용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사외로 절대 반출하지 않겠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5. NOTE PC를 사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반출관련 정보이외의 모든 정보를 삭제하겠습니다. (단, 개인 OA용 PC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NOTE PC 반출시 회사의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NOTE PC 검열에 대해 동의하며, 이를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NOTE PC 사용중 입수한 본인 또는 타인의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8. 회사로부터 할당된 전산 ID 및 패스워드는 본인만 알고 사용할 것이며,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9. NOTE PC는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단, 출장용등 대여용으로 회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NOTE PC 사양		사 용 자	
모 델 명		소 속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용용도		성 명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전산매체등 사용자용)

_____본인은 ○○○○ 주식회사 (이하 “회사”)내에서 전산매체 등을 사용함에 있어 회사의 정보자산, 보안사항, 영업비밀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이하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정된 업무수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로도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회사에서 허가한 기기에 대한 사용, 휴대, 보관 등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용중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본인은 기기별 하기 보안 수칙을 준수하겠습니다.
 - ① USB 메모리, FD Drive, CD/DVD RW : 용도의 Write 금지, 반출시 반출증 제시, 매월 사용실적 제출, 관리대장의 성실한 기록관리
 - ② HDD : ①항과 동일하나, 반출이 불가하며 시건장치가 된 곳에 보관
5. 본인은 회사에서 허가한 기기라도 회사의 허가 없이 영업비밀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자료도 사외로 절대 반출하지 않겠으며,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본인의 전산매체 검열에 동의하며, 이를 위해 협조하겠습니다.

7. 본인은 기기 사용중 입수한 본인 또는 타인의 개발, 설계, 고안한 기술과 정보 및 이에 준하는 산출물에 관한 소유권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8. 본인은 기기를 절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않겠으며, 이에 따른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위의 서약 사항을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용기기		사 용 자	
모 델 명		소 속	
일련번호		주민등록번호	-
사용용도		성 명	(서명)

○ ○ ○ ○ 주식회사 귀중

商业秘密保护协议书

(新进职员/在职者)

——本人于○○○○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在职（包括
休职期间）时关于公司商业秘密保护协议书面声明下列事项：

1. 本人在职时对作为公司的不公开而拥有独立的经济价值的，通过相当的努力而保持秘密的，公司开发、生产、销售方法及有利于其他营销活动的技术上、经营上的信息（以下简称“商业秘密”）之保护有关的各种公司规定彻底严格遵守，并对此负责任。
2. 本人对公司的商业秘密除外指定的业务，任何理由不利用到私的目的或者向公司内外第三者不揭露或不公开。（但，如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照商业秘密保护之规定容许的情况例外）
3. 本人决不接近不受容许的信息或设施，必须彻底严格遵守公司的安全规定、指南及政策。
4. 本人对公司的商业秘密除了所指定的业务以外，复印、录音、拍摄及采用其他方法的复制等一切不做，而且不以个人目的地保有任何形态的副本。（但，如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照商业秘密保护之规定容许的情况例外）
5. 本人为了防止泄露可以侵害公司利益的技术和信息，同意公司控制和检阅邮件。
6. 本人承认对在职时业务有关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技术与信息以及相关产物的所有权属于公司。

7. 本人在职时兼任公司商业秘密可以泄漏的同种、类似厂商的高/低级职员或提供咨询等与该厂商不合作，如发生此种情况与公司协议。
8. 本人在退职后不经公司事前同意将在职时得知的商业秘密以任何方法向第三者不揭露或不公开。
9. 本人在职时或在退职后，如公司对本人的担当业务有关的权利采取法律措施，向公司提供积极的合作。

本人诚实遵守上述事项，如违反上述声明事项就损害公司依照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护的法律规定受处，并对公司的损害赔偿及民事、刑事上负所有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而签订。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订)

股份有限公司

商业秘密保护协议书

(离职者)

本人从○○○○股份有限公司（以下简称为“公司”）退职时关于公司的商业秘密保护书面声明下列事项：

1. 本人在退职后对作为公司的不公开而拥有独立经济价值的，通过相当努力而保持秘密的，公司开发、生产、销售方法及有利于其他营销活动的技术上和经营上的信息（以下简称“商业秘密”）之保护有关的各种公司规定彻底严格遵守，并对此负责任。
2. 本人对公司的商业秘密除外指定的业务，任何理由不利用到私的目的或者向公司内外第三者不揭露或不公开。（但，如有公司的事前书面同意或依照商业秘密保护之规定容许的情况例外）
3. 本人在退职时缴回本人在职时得到或管理的秘密有关事项在内的一切商业秘密资料，而且不以个人目的保有对此任何形态的副本。
4. 本人为了防止泄露可以侵害公司利益的技术和信息，同意公司控制和检阅邮件。
5. 本人承认关于在职时业务有关独自或与他人共同制作、开发、设计、发明的技术与信息以及相关产物的所有权属于公司。
6. 本人从离职日起○○年期间，不创办或不就职公司商业秘密可以泄漏的同种、类似厂商，如发生此种情况与公司协议。
7. 本人在离职后不经公司事前同意将在职时得知的商业秘密以任何方法向第三者不揭露或不公开。

8. 本人在离职后，如公司对本人的担当业务有关的权利采取法律措施，向公司提供积极的合作。

本人诚实遵守上述事项，如违反上述声明事项就损害公司依照防止不正当竞争及商业秘密保护的法律和公司产品规定受处，并对公司的损害赔偿及民事、刑事上负所有责任。

200 年 月 日

确认上述内容而签订。

所属：

身份证号码：

姓名： (签订)

股份有限公司

[부록4]

경 고 장

발신번호 :

수 신 : ○○○○ 주식회사

소 재 지 :

대표이사 :

제 목 : 특허권 침해사실 통보와 침해중지 요청 및 이에 대한 답변 요구

1. 귀사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_____본인은 “_____”이란 발명의 명칭으로 ○○○○년 ○○월 ○○일자로 특허출원을 하여 ○○○○년 ○○월 ○○일자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등록사실은 첨부 1 특허등록원부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기 이권 등록특허(등록번호10-○○○○○○○○) ○○○○의 특허청구범 위 제1항은 “○○○○ 더 크게 형성되는 것(이하 “자전거”)을 특징으로 하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재사실은 첨부 2 등록특허공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 위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본인은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권과 동일한 자전거(첨부 3)를 ○○○○으로부터 구입을 하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및 본인의 특허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같이 경고장을 보내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귀사의 침해행위에 대해 곧바로 법에 따른 자위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귀사에서 본인의 특허품인 자전거를 사용하여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알리고 귀사가 스스로 이와 같은 침해행위를 중지함과 동시에 본인의 요구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 본인의 특허권에 해당하는 물품인 자전거를 제조 및 판매하는 귀사의 실시 행위는 특허권 침해의 성립요건인 i) 특허발명의 실시 ii) 보호범위 내의 실시 iii) 업으로 실시 iv) 정당한 권원이 없는 실시에 해당하므로 현재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귀사에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민사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인은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사의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제조 및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225조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귀사의 계속적인 침해행위는 고의가 입증되므로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 따라서 본인은 귀사를 고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허법 제231조에 몰수규정에 따라 귀사의 침해품을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

6. 따라서 본인의 특허권의 침해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적인 침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침해를 할 경우 상기 민사적 구제 및 형사적 구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며 이하 다음과 같은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다 음 -

- (1) 이 경고장을 받는 즉시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작 및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귀사가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공급한 업체(주소, 연락처, 대표자명 포함), 공급량, 공급기간 및 공급단가 일체의 정보를 문서화하여 본인에게 ○○○○년 ○○월 ○○일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으로서 금일 현재 귀하가 보유하고 있거나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물품을 ○○○○년 ○○월 ○○일까지 모두 수거하여 본인의 입회하에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차후로는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행위를 절대로 자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본인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귀사의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본인의 등록특허를 실시함에 따른 손해배상액 (또는 합의금)을 본인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 첨부 1. 특허등록원부(등록번호 10-○○○○○○○○) 사본 1부
- 첨부 2. 등록특허공보 사본 1부
- 첨부 3. 귀사가 구입하여 사용하는 본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전거의 사진. 끝.

○○○○년 ○○월 ○○일

발 신 : ○○○○ 주식회사
소재지 :

[부록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4.12.31 법률 728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게 하는 행위

라.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허위의 원산지의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마.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 이외의 곳에

서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또는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바.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내용·제조방법·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사. 공업소유권의보호를위한과리협약(이하 "과리협약"이라 한다)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의 체결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전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아.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보유·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1) 상표 등 표지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 또는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

(2)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을 방해할 목적

(3) 그 밖의 상업적 이익을 얻을 목적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갖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기망·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등

제3조 (국기·국장등의 사용금지) ①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이나 국제기구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국의 정부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등) ①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제6조 (부정경쟁행위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한한다.

제7조 (부정경쟁행위의 조사등)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장부·제품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분량의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특허청장은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사목의 규정

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선의자에 관한 특례) ①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제2조제3호 다목 또는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영업비밀 보유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장 보칙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①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②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③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 등에 사용된 상표 등 표지의 사용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⑤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 (자료의 제출)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액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제2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형법중 국기·국장에 관한 규정에 제2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18조제3항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다.

제16조 삭제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특허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벌칙) 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국장 기타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결국정부의 감독용·증명용 표지

④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⑤ 삭제

제18조의2 (미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의3 (예비·음모) ① 제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 각 해당 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제20조 (과태료)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7095호,2004.1.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제7289호,200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⑨ 내지 <17>생략

[부록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2006.10.27 법률 제8062호], 시행일 2007.4.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과 보호에 필요한 중

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업·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부당한 처우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산업기술 및 지식의 확산과 활용이 제약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직업윤리의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 정책의 수립·추진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단계별 목표와 추진방안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가공과 보급에 관한 사항
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

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사항
6. 대상기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5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된다.

⑤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관리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발전추세 및 국내외 시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지침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 등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①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당국가 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따른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국가핵심기술이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전략기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대상 외의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신고대상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⑦ 산업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국가핵심기술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한 경우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한 심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3.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미승인 또는 부정승인 및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심의

⑨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제1항의 승인, 제4항의 신고, 제5항 및 제7항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이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점검토의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대상기관의 장은 산업기술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성과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

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권고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권고 및 개선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

6. 제11조제5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①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산업기술보호의 기반구축 및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제16조 (산업기술보호협회의 설립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 및 협력
2.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관련 정보 전파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상담·홍보·교육·실태조사
4. 국내외 산업기술보호 관련 자료 수집·분석 및 발간
5.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지원
6.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거나 협회의 정관이 정한 사업

⑤ 정부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상기관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조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국제협력) ① 정부는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보안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산업보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의 국제적 차원의 조사·연구
2.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차원의 인력·정보의 교류
3. 산업보안기술 및 보안산업에 관한 국제적 전시회·학술회의 등의 개최
4. 그 밖에 국제적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9조 (산업기술보호교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내용·기간·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산업보안기술의 개발지원 등) ① 정부는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기술보호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산업기술보호 포상 및 보호 등) ①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정착 및 국적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포상금 지급, 신변보호 등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대상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기술 보호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①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기술 또는 정보의 보호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산업기술유출의 방지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자

3. 산업기술의 보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산업기술의 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임원직에 있는 자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4조 (조정부) ① 분쟁의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부 분쟁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에 일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6조 (분쟁의 조정) ①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1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자료요청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요구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진술을 청취할 경우 비공개로 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및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조정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해당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9조 (조정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실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조정절차 등) 분쟁의 조정방법·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준용법률) 산업기술유출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수수료) 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소속기관의 장이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5조 (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6.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6장 별칙

제36조 (별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 (예비·음모) ① 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제8062호, 2006.10.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사례 및 대응전략

발행일 2007년 9월 19일 발행

편집 및 발행 중소기업청(☎042-481-4403, 450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2-3787-0505, 0502)

연구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72)

※ 사전 승인 없이 본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